

2023년 강남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강남소방서의 인사·교육, 예산·회계, 물품·장비, 화재·구조·구급, 현장대응, 예방민원 업무처리에 대하여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임.

I 관련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
- 소방감사담당관-820(2023.1.18.)호 「2023년 행정감사 기본계획 알림」
- 소방감사담당관-11864(2023.9.25.)호 「2023년 하반기 자체 종합감사 변경일정 알림」

II 감사 개요

- 감사기간: 2023. 10. 6.(금) ~ 10. 20.(금) / 10일간
↳ 【사전감사】 2023. 10. 4. ~ 10. 5.(2일간)
- 감사인원: 감사팀장 등 7명
- 감사범위: 2019년 9월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소방행정 전 분야
- 중점 감사사항
 - 교대근무 복무관리 준수, 적당편의 소극적 업무형태, 감독자의 책임성 강화
 - 인사·교육, 예산·회계, 물품·장비운영 업무처리
 - 화재·구조·구급, 소방용수시설, 교육·훈련, 의용소방대 등 업무처리
 - 건축허가동의, 소방특별조사, 위험물, 방염, 완비증명 등 예방업무 처리실태
 - 소방민원 업무처리에 대한 여론 청취
 - 수범(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발굴 등

Ⅲ 일반 현황

관할여건 강남구(행정동 22, 법정동 14개동), 39.5km²(시의 6.5%), 238,500세대, 540,730명

- 연간 화재, 구조, 구급 출동 건수 서울소방 1위
- 특정소방대상물(1위), 유동인구(100만여 명) 등 소방 잠재수요 최대
- 복합건축물, 노후 아파트 등 상존으로 복합적 화재 취약요인 존재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 3과, 1단, 5안전센터
- 인력: 365명(소방 363, 기타 2)

소방장비 및 용수시설

- 소방차량 55대(특수차 6, 일반차 42, 이륜차 7)
- 통신장비 875대(유선 295, 무선 580)
- 소방용수 4,010개소
※ 비상소화장치: 79개소(주거밀집 34, 시장지역 12, 소방차 진입곤란 2, 기타지역 31)

특정소방대상물 13,744개소(복합 5,605, 근생 5,205, 업무시설 1,245, 공동주택 880, 숙박 117, 종교 103, 교육연구 131, 기타 326)

- 고층건물(11층이상) 1,791개소, 중점관리대상 144개소, 다중이용업소 4,851개소
- 위험물시설 279개소, 가스시설 67개소

세입 및 세출 예산 2022년 (단위: 천 원)

- 세입징수: 세외수입 금55,990천 원
- 세출예산: 금2,454,258천 원(기본경비 964,684 / 사업비 1,489,574)

소방재난활동 현황 2022년

- 화재 2,071건 발생 / 인명피해 17명(부상 17) / 재산피해 1,923백만 원
- 구조 12,279건 1,245명 구조(1일 평균 32.5건, 3.4명)
- 구급 38,529건 18,682명 이송(1일 평균 92.1건, 48.8명)

IV 감 사 결 과

총괄 요약

적출사항: 43건

※ 제반 규정이 명확한 경우 기관장 재량행위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할 것.

현지조치: 7건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현황 및 위험물관리자 선임정보 관리 소홀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수량 및 상세정보 등 미입력
- 다중이용업소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소홀 등

수범사례: 4건

- “2023년 자율주행 화재순찰로봇 개발·활용” 실증사업 수행
- 소방차량 교통(안전) 사고 줄이기 추진 실천
- IOT 플러그 보급으로 SMART 전기화재 예방 등

주요 적출 사항

소방행정(17)

- 징계처분자 기록말소 및 호봉 재확정 누락
- 중점관리대상 비위 징계처분자 민원업무 담당자 보직 부여
- 구급 대체인력 운영 소홀
- 2급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수료자 자격 취득 부적정
- 교대제근무자 초과근무 운영 소홀 등

재난관리(8)

-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펌프차량 화재예방순찰 미실시
- 펌블런스 출동 및 수당 지급업무 소홀
- 구급출동 업무 소홀 및 출동가산금 부당 수령
- 구급차량 사적 사용 및 업무처리 부적정 등

예방행정(17)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소홀 및 대상물 관리 소홀
- 지하구 현황 및 관리카드 현행화 소홀
- 의료시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부과 및 감경 처리 부적정
- 소방시설업 등 일제점검 소홀 등

현장대응(1)

- 화재발생대상 화재조사보고 규정 위반 등 사후조치 소홀

1 징계처분자 기록말소 및 호봉 재획정 누락

관련 규정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 같은 규칙 제14조의 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 소방공무원 징계 등 기록말소 시행지침
-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 재획정), 제13조(정기승급)
- 같은 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과에서는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의 징계 기록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소 조치를 완료한 후 해당공무원에게 말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고 인사기록카드상 및 인사프로그램상 말소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호봉 재획정을 누락하는 등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함.

소속	직급	성명	징계종류	처분일	기록말소 예정일	기관장 결재	기록 말소	말소 통지	시스템 입력	호봉 재획정
○○ 안전센터	소방○	○○○	감봉○월	2016. 10. 1.	2022. 1. 1.	누락	누락	누락	누락	누락

2 중점관리대상 비위 징계처분자 민원업무 담당자 보직 부여

관련 규정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정의)
- 같은 규정 제16조(소방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과에서는 20○○. ○. ○. ○○○○으로 ‘○○ ○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을 “서울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3년간 민원업무에 보직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 ○. ○○. 예방과 화재안전조사 담당자로 보직 부여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소속	계급	성명	징계사유	처분양정	징계처분일	담당 업무
○○과	소방○	○○○	○○○○	중징계(○○ ○월)	20○○. ○. ○.	화재안전조사

3 구급 대체인력 운영 소홀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 행정2부시장 방침 85호(2012.3.21.) 「출산·육아공무원 지원 대체인력은행 운영계획」
- 서울시 소방행정과-3826(2023.2.13.)호 「2023년도 구급대체인력 운영계획」

지적사항 요약

- 각 소방서에서는 출산휴가·휴직자(육아, 공무상 질병)의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급출동 공백을 최소화하여 출동소방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별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구급대원으로 배치·관리하고 있다.
- 대체인력 신청대상은 직무 및 성별에 관계 없으며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공무상 질병 휴직자”, “임신초기자(1~3개월) 및 임신공무원”, “난임공무원 (휴직 또는 30일 이상 휴가·병가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함)” 이며 채용은 각 소방서 행정팀에서 담당하고 구급대원의 수요 발생시 채용된 대체인력으로 운영하며, 기타 현장대원의 경우 응급구조사 2급 자격자를 진압대원으로 보직전환 후 대체인력을 구급대원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 ○○소방서 ○○○○○에서는 자체 사무분장을 하면서 팀별 진압(팀별 2~3명 부족), 운전(팀별 3명 부족)원이 부족함에도 기존 구급대원을 진압대원으로 보직변경 하지않고 대체인력 3명 전원을 각 팀별 구급대로 배치하여 2소대를 4명으로 근무편성 하는 등 구급대체인력 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였다.

4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부적정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10장(징계)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에서는 20○○년 제○회, 제○회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을 임명하였으나 공무원 위원 3명, 민간 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 민간위원의 인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고, 이후 별도의 계획 변경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등 절차를 위반함.

연번	제목	일시	대상자	징계위원회 구성	
1	20○○년 제○회 ○○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개최	20○○. ○. ○.(수) 09:10~09:55	○○○○○ 소방○ ○○○	내부위원 3명 (○○○, ○○○, ○○○)	외부위원 2명 (○○○, ○○○)
2	20○○년 제○회 ○○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개최	20○○. ○. ○.(수) 17:00~17:50	○○○○○ 소방○ ○○○	내부위원 3명 (○○○, ○○○, ○○○)	외부위원 2명 (○○○, ○○○)

5 2급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수료자 자격 취득 부적정

관 련 규 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9조(양성 및 보수교육훈련)
- 소방청 119구급과-115(2015.01.07.)호 「2015년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향상 추진 계획」
- 「긴급출동체계 및 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 통보
- 서울시 재난대응과-5465(2022.3.11.)호 「2급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추진 계획 알림」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 ① 2018~2019년 기간 중 응급구조사 양성과정(9주)이 포함된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시험에 응시하였어야 함에도 5년(2019~2023년)중 4년 동안 시험 접수를 하지 않거나, 응시하였으나 합격률이 89.4%에 달하는 2019년 실기시험에 불합격 함.

연번	계급	성명	2급 응급구조사 자격중 연도별 응시(합격) 여부					부적정 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	소방○	○○○	실기 불합격	시험 미접수	시험 미접수	시험 미접수	시험 미접수	4년간(2020,2021,2022,2023) 시험 미접수
2	소방○	○○○	실기 불합격	시험 미접수	시험 접수 미응시	실기 합격, 필기 불합격	시험 미접수	3년간(2020, 2021, 2023) 시험 미접수
3	소방○	○○○	해당 없음	실기 불합격	시험 미접수	시험 미접수	시험 미접수	3년간(2021, 2022, 2023) 시험 미접수
4	소방○	○○○	시험 미접수	시험 미접수	실기 불합격	시험 미접수	시험 미접수	4년간(2019,2020,2022,2023) 시험 미접수

- ② 2019년 신규임용자반 교육 수료 후 당해연도의 필기·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하였음에도 2023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음.

연번	계급	성명	교육 수료연도	합격연도	부적정 내용	자격증 미발급 사유
1	소방○	○○○	2019년	2019년	최초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으나 자격증 미발급	건강진단서를 미제출
2	소방○	○○○	2019년	2019년	최초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으나 자격증 미발급	건강진단서를 미제출

6 유연근무제(시차 출퇴근제) 운영 소홀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 징계·복무관련 예규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
- 서울시 소방행정과-21281(2022.04.05.)호 「서울특별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안내」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면서 복무관리시스템 등록을 통해 출근 또는 퇴근시간을 지정하고, 출·퇴근 기록장치에 반드시 태그 인식(e-사람 출·퇴근시간 지정 체크) 하여야 함에도 출근 시에만 기록을 하고 퇴근 시에는 결락하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함.(총 9회)

7 교대제근무자 초과근무 운영 소홀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 근무규칙
-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대제근무자의 초과근무 운영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 ○○119안전센터에서는 2023년 8월 소방○ ○○○(구급운전)에게 본인의 정규 근무일 외 비번 15일 중 2/3을 차지하는 10일에 대해 주간 또는 야간의 비번 초과근무를 명령하여 당월 총 138시간의 초과근무를 실시하게 하였고, 2023년 9월에도 총 10일의 비번 초과근무를 명령하여 당월 총 138시간의 초과근무를 실시하게 하는 등 과도하게 초과근무를 명령함. (2개월간 1인에게 비번일 20일, 총 276시간 초과근무 명령)

연번	소속	계급	성명	해당 월	근무형태	직위	부적정 내역																																																																																																																						
1	○○ 안전센터	소방○	○○○	2023년 8월	4조 2교대	구급 운전	비번일 15일 중 10일 초과근무 등 당월 총 비번 초과근무 138시간 근무명령 (8.9.-8.22./ 14일간 비번 없이 연속 근무) (8.24.-9.3./11일간 비번 없이 연속 근무) ※ 8.9.-9.3./26일 동안 1일의 비번일 제외 매일 출근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합계</th> <th colspan="14">근무일자</th> <th colspan="5">근무부서 지정</th> </tr> <tr> <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th>13</th><th>14</th><th>15</th><th>16</th><th>17</th><th>18</th><th>19</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h>25</th><th>26</th><th>27</th><th>28</th><th>29</th><th>30</th><th>31</th> </tr> </thead> <tbody> <tr> <td>근무구분</td> <td>-</td> <td>주</td><td>야</td><td>비</td><td>비</td><td>주</td><td>야</td><td>비</td><td>비</td><td>주</td><td>야</td><td>야</td><td>야</td><td>주</td><td>야</td><td>주</td><td>야</td><td>주</td><td>야</td><td>주</td><td>야</td><td>주</td><td>야</td><td>비</td><td>야</td><td>주</td><td>야</td><td>야</td><td>야</td><td>주</td><td>야</td><td>야</td> </tr> <tr> <td>(A)배정 근무시간</td> <td>321</td> <td>9</td><td>15</td><td></td><td></td><td>9</td><td>15</td><td></td><td></td><td>9</td><td>15</td><td>15</td><td>15</td><td>9</td><td>15</td><td>9</td><td>15</td><td>9</td><td>15</td><td>9</td><td>15</td><td>9</td><td>15</td><td></td><td>15</td><td>9</td><td>15</td><td>15</td><td>15</td><td></td><td>15</td><td>15</td> </tr> </tbody> </table>								구분	합계	근무일자														근무부서 지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근무구분	-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야	야	주	야	주	야	주	야	주	야	주	야	비	야	주	야	야	야	주	야	야	(A)배정 근무시간	321	9	15			9	15			9	15	15	15	9	15	9	15	9	15	9	15	9	15		15	9	15	15	15		15	15
구분	합계	근무일자														근무부서 지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근무구분	-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야	야	주	야	주	야	주	야	주	야	주	야	비	야	주	야	야	야	주	야	야																																																																																													
(A)배정 근무시간	321	9	15			9	15			9	15	15	15	9	15	9	15	9	15	9	15	9	15		15	9	15	15	15		15	15																																																																																													

연번	소속	계급	성명	해당 월	근무형태	직위	부적정 내역																																																																																																																
2	○○○ 안전센터	소방○	○○○	2023년 9월	4조 2교대	구급 운전	과도한 초과근무 명령 (비번일 18일 중 10일 초과근무) 당월 총 비번 초과근무 시간 138시간																																																																																																																
<table border="1"> <thead> <tr> <th>합계</th> <th colspan="14">근무일자</th> <th colspan="5">근무부서 지정</th> </tr> <tr> <th></th> <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th>13</th><th>14</th><th>15</th><th>16</th><th>17</th><th>18</th><th>19</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h>25</th><th>26</th><th>27</th><th>28</th><th>29</th><th>30</th> </tr> </thead> <tbody> <tr> <td>-</td> <td>야</td><td>주</td><td>야</td><td>비</td><td>비</td><td>주</td><td>야</td><td>비</td><td>야</td><td>주</td><td>야</td><td>비</td><td>비</td><td>당</td><td>야</td><td>주</td><td>야</td><td>주</td><td>야</td><td>야</td><td>비</td><td>당</td><td>야</td><td>비</td><td>비</td><td>당</td><td>야</td><td>주</td><td>야</td><td>주</td> </tr> <tr> <td>315</td> <td>15</td><td>9</td><td>15</td><td></td><td></td><td>9</td><td>15</td><td></td><td>15</td><td>9</td><td>15</td><td></td><td></td><td>24</td><td>15</td><td>9</td><td>15</td><td>9</td><td>15</td><td>15</td><td></td><td>24</td><td>15</td><td></td><td>24</td><td>15</td><td>9</td><td>15</td><td>9</td> </tr> </tbody> </table>								합계	근무일자														근무부서 지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야	주	야	비	비	주	야	비	야	주	야	비	비	당	야	주	야	주	야	야	비	당	야	비	비	당	야	주	야	주	315	15	9	15			9	15		15	9	15			24	15	9	15	9	15	15		24	15		24	15	9	15	9
합계	근무일자														근무부서 지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야	주	야	비	비	주	야	비	야	주	야	비	비	당	야	주	야	주	야	야	비	당	야	비	비	당	야	주	야	주																																																																																									
315	15	9	15			9	15		15	9	15			24	15	9	15	9	15	15		24	15		24	15	9	15	9																																																																																										

② ○○○○○에서는 소방○ ○○○에게 야간근무를 3일을 넘겨(야야야, 야야야야) 연속 근무하게 하는 등 휴게시간을 적절히 보장하지 않음.

연번	소속	계급	성명	해당 월	근무형태	직위	부적정 내역																																																																																																																		
1	○○○ ○○○	소방○	○○○	2023년 2월	4조 2교대	구급	야간근무를 연속 3일을 넘겨 실시토록 명령																																																																																																																		
<table border="1"> <thead> <tr> <th>합계</th> <th colspan="14">근무일자</th> <th colspan="5">근무부서 지정</th> </tr> <tr> <th></th> <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th>13</th><th>14</th><th>15</th><th>16</th><th>17</th><th>18</th><th>19</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h>25</th><th>26</th><th>27</th><th>28</th> </tr> </thead> <tbody> <tr> <td>-</td> <td>야</td><td>야</td><td>야</td><td>비</td><td>당</td><td>비</td><td>당</td><td>비</td><td>당</td><td>비</td><td>당</td><td>비</td><td>당</td><td>비</td><td>주</td><td>주</td><td>당</td><td>주</td><td>당</td><td>비</td><td>야</td><td>야</td><td>야</td><td>야</td><td>비</td><td>야</td><td>비</td><td>당</td><td>비</td><td>야</td> </tr> <tr> <td>321</td> <td>15</td><td>15</td><td>15</td><td></td><td>24</td><td></td><td>24</td><td></td><td>24</td><td></td><td>24</td><td></td><td></td><td>9</td><td>9</td><td>24</td><td></td><td>24</td><td></td><td></td><td>15</td><td>15</td><td>15</td><td>15</td><td></td><td>15</td><td></td><td>24</td><td></td><td>15</td> </tr> </tbody> </table>								합계	근무일자														근무부서 지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야	야	야	비	당	비	당	비	당	비	당	비	당	비	주	주	당	주	당	비	야	야	야	야	비	야	비	당	비	야	321	15	15	15		24		24		24		24			9	9	24		24			15	15	15	15		15		24		15			
합계	근무일자														근무부서 지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야	야	야	비	당	비	당	비	당	비	당	비	당	비	주	주	당	주	당	비	야	야	야	야	비	야	비	당	비	야																																																																																											
321	15	15	15		24		24		24		24			9	9	24		24			15	15	15	15		15		24		15																																																																																											
2	○○○ ○○○	소방○	○○○	2023년 4월	4조 2교대	구급	야간근무를 연속 3일을 넘겨 실시토록 명령																																																																																																																		
<table border="1"> <thead> <tr> <th>합계</th> <th colspan="14">근무일자</th> <th colspan="5">근무부서 지정</th> </tr> <tr> <th></th> <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th>13</th><th>14</th><th>15</th><th>16</th><th>17</th><th>18</th><th>19</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h>25</th><th>26</th><th>27</th><th>28</th><th>29</th><th>30</th> </tr> </thead> <tbody> <tr> <td>-</td> <td>주</td><td>비</td><td>당</td><td>비</td><td>야</td><td>비</td><td>야</td><td>주</td><td>당</td><td>비</td><td>야</td><td>비</td><td>야</td><td>주</td><td>당</td><td>비</td><td>주</td><td>주</td><td>주</td><td>주</td><td>주</td><td>주</td><td>비</td><td>야</td><td>야</td><td>야</td><td>야</td><td>비</td><td>당</td><td>비</td><td>당</td> </tr> <tr> <td>311</td> <td>9</td><td></td><td>24</td><td></td><td>15</td><td></td><td>15</td><td>9</td><td>24</td><td></td><td>15</td><td></td><td>15</td><td>9</td><td>24</td><td></td><td>9</td><td>8</td><td>9</td><td>9</td><td>9</td><td></td><td>15</td><td>15</td><td>15</td><td>15</td><td></td><td>24</td><td></td><td>24</td> </tr> </tbody> </table>								합계	근무일자														근무부서 지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주	비	당	비	야	비	야	주	당	비	야	비	야	주	당	비	주	주	주	주	주	주	비	야	야	야	야	비	당	비	당	311	9		24		15		15	9	24		15		15	9	24		9	8	9	9	9		15	15	15	15		24		24
합계	근무일자														근무부서 지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주	비	당	비	야	비	야	주	당	비	야	비	야	주	당	비	주	주	주	주	주	주	비	야	야	야	야	비	당	비	당																																																																																										
311	9		24		15		15	9	24		15		15	9	24		9	8	9	9	9		15	15	15	15		24		24																																																																																											

8] 연간 6일 초과 병가자 복무관리 소홀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및 제18조(병가)
- 국가공무원 징계·복무관련 예규
- 연도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 소방○ ○○○는 “물리치료 및 가료” 등의 사유로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면서 휴가 신청시 진단서를 일부 첨부하지 않았고 감사기간 중 병가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미첨부 병가일의 병원 진료내역을 확인한 바 병원의 진료 내역이 없음이 확인되는 등 병가를 목적외로 부적정하게 사용함.

9 소방공무원증 관리 소홀

관련 규정

- 소방공무원증 규정 제4조(발급권자)
- 같은 규정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및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2023년 ○○소방서 종합감사 기간 중 전 직원에 대한 소방공무원증 소지 여부 확인시 본인의 공무원증 분실 사실을 인지하는 등 소방공무원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총 2명)

10 정보공개 업무처리 소홀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같은 법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 ○○○○○○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 후 기한 내(10일) 내부 결재를 완료하였으나 시스템에서 수동 통지 처리를 하지 않아 기한 경과 후 민원인에게 공개 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소홀히 함.(총 2건)

11 근무지내 국내여비 집행업무 소홀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
- 같은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 서울시 소방행정과-30207(2013.11.5.)호 「e-호조시스템 일상경비 지급품의(결재요청) 방법 전면 시행 알림」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지침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비 집행 및 수령과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함.
 - ① ○○○○○○, ○○○○○○, ○○○○, ○○○○○○에서는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직원에게 2만원을 지급하거나,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 왕복 2km 미만의 출장임에도 실비 정산없이 여비 전액을 지급함.(총20명, 25건, 환수: 금1,020,000원)
 - ② ○○○○○○에서는 2023. 3. 2.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비와 식비가 기존 일 20,000원 → 25,00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후에 진행되는 교육의 입교자에게 개정된 여비의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의 여비를 지급함. (총 1명, 1건, 환급: 금17,500원)
 - ③ ○○○○○○ ○○○○○○○ 소방○ ○○○○은 20○○. ○. ○.(목) ○○○○○○○의 ○○ 계약직 공개채용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면접위원 수당을 수령하였음에도 왕복 2기로 이내인 ○○○○○○○○(○○소방서에서 도보로 320m)으로의 출장건에 대해 중복으로 여비를 수령함.(총 1명, 1건, 환수: 120,000원)
 - ④ ○○○○에서는 부서원의 2019년 9월분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공문 생산없이 e-호조 시스템상으로만 지출 처리함.(총 65건, 금7,170,000원)

1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등 계약절차 처리 부적정

관련 규정

- 2023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 도시철도법 제21조(도시철도 채권의 매입),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에서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도시철도채권 징구 등 계약업무 처리를 소홀히 함.
 - ① ○○○○○○에서는 2021년 ○○119안전센터 청사 외벽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감리 용역 및 2023년 ○○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 설치 공사 감리 용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절감과 용역품질 향상을 위해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사업일 경우 자체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심사없이 총 2건의 용역사업을 실시함.(총 2건)

연번	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종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비고
1	2021년 ○○119안전센터 청사 외벽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감리용역	2021-09-28	1,650,000	수의계약	미실시	
2	○○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 설치 공사 감리용역 발주 계획	2023-08-25	6,567,100	수의계약	미실시	

② ○○○○○에서는 2022년 ○○119안전센터 정확조 긴급 보수공사 시 공사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5,000원 단위로 계약 체결 시 매입하도록 되어있으나 매입하지 않음.(총 1건)

연번	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종류	도시철도채권	비고
1	○○119안전센터 정확조 긴급 보수공사 계약	2022-10-08	25,960,000	수의계약	미징구	

③ ○○○○○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사업에 대하여 사업발주 계획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서울계약마당 시스템)에 사전등록하여 계약에 대한 업체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게 되어 있으나 2022년 32건, 2023년 22건을 누락하여 총 58건의 계약을 미등록 함.(총 58건)

연번	연도	연간 계약건수	발주계획등록건수	발주계획 미등록 건수	비고
1	2022년	차고문 낙하방지장치 등 36건	4건	32건	
2	2023년	119안전센터 차고 및 옥상 방수재 구매 등 22건	0건	22건	

13 물품구매 계약 및 담보책임 업무 소홀

관 련 규 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 2023년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제3절(하자담보제도)

지 적 사 항 요약

○ ○○○○○에서는 물품 제조·구매 및 설치용역 사업시 사전 계약심사, 하자보수보증 등 계약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함.

① ○○○○○에서는 2020년 ○○소방서 보이는 소화기 제작, 설치 용역 및 ○○119안전센터 청사 공간 재구성, 가구 구매 사업 시 모든 용역,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액 2/100 이상 10/100 이하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고 이를 담보로 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총 2건)

연번	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종류	하자보수보증	비고
1	○○○○보이는 소화기 제작 및 설치 용역	2020-05-14	46,000,000	수의계약	(X)	
2	○○119안전센터 청사 공간 재구성 및 가구 구매	2022-09-17	25,960,000	수의계약	(X)	

14 불용품 매각절차 등 업무 소홀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76조(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불용물품 처분)

지적사항 요약

○ ○○○○○○ ○○○○○○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용물품의 매각 절차를 소홀히 함.

- ① 불용 소방자동차(구급차 2대) 매각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며, 모든 물품의 매각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 입찰로 수의 계약 시 2회 이상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물품은 매수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가격(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지만 감정평가액(4,400,000원)이 아닌, 폐차 조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폐차·고철 대금(800,000원)으로 세입처리하는 등 불용품 매각 절차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매각 대금의 손실을 초래함.(총2건)

부서명	차량번호	감정평가액	최초등록일	매각년월일	방법	매각업체	최종매각금액
○○○○○○	71고○○○○	2,200,000	2015.08.17	2020.5.25	수의계약	(주)수원폐차산업	400,000
○○○○○○	71고○○○○	2,200,000	2015.08.17.	2020.5.25.	수의계약	(주)수원폐차산업	400,000

15 소방장비의 운영 및 기록관리 부적정

관련 규정

- 소방장비관리법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기록관리), 제21조(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4조(지도·감독 등)
- 소방장비관리 업무관련 기록관리 철저 알림(본부 안전지원과-6395호/2021.04.05.)

지적사항 요약

○ ○○○○○○에서는 소방차량 및 장비의 관리 및 지도·감독 등 시스템 상 운영을 소홀히 함.

- ① ○○○○○○ 및 ○○, ○○,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장비에 이상이 있을시에는 고장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고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를 입력하여야 하지만 고장발생 이후 부터 수리완료일까지 총 8건의 소방장비를 이상이 없는 상태로 관리함.(총 8건)

연번	부서	장비명	고장일자	시스템입력	비고
1	○○○○○○	공기압축기	2022.06.24.	고장(점검) 결과 미입력	
2	○○119안전센터	탱크차(○○호)	2023.05.16.	고장(점검) 결과 미입력	
3	○○119안전센터	구급차(6-○○호)	2023.06.06.	고장(점검) 결과 미입력	
4	○○119안전센터	화학차(○○호)	2023.04.07.	고장(점검) 결과 미입력	
5	○○119안전센터	탱크차(○○호)	2023.06.07.	고장(점검) 결과 미입력	
6	○○119안전센터	펌프차(○○호)	2022.01.17.	고장(점검) 결과 미입력	
7	○○119안전센터	구급차(6-○○호)	2022.04.01.	고장(점검) 결과 미입력	
8	○○119안전센터	구급차(6-○○호)	2022.07.18.	고장(점검) 결과 미입력	

② ○○,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차량을 운용·관리하면서 출동차량 중 총 2대에 대한 운행기록을 누락하여 119행정정보시스템 운행 거리와 실제 차량별 운행거리를 상이하게 입력하였고, 특히 이륜차량에 대한 관리자 부재에 의한 누락이 과다하여, 평균연비 관리를 소홀히 함.(총 2건)

연번	부서	차량명	시스템운행거리	실제 운행거리	차이	비고
1	○○119안전센터	전기이륜 (○○○○)	1,467	1,767	300	10.6. 기준
2	○○119안전센터	전기이륜 (○○○○)	718	367.5	351	10.6. 기준

③ ○○119안전센터에서는 차량의 전반적인 관리 상황에 대한 운행일지에 대해 관리자가 즉시 결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2021. 1월 ~ 2023. 10월 감사일 현재 까지 878건의 운행기록을 미결재 상태로 부적정하게 관리함.

연번	부서	차종	차량명 (차량번호)	미입력 기간	시스템 결재 확인	비고
1	○○소방서 ○○119안전센터	○○차	○○○○○○	2021.1.~2022.7.10	716건 미입력 (소방경 최재권)	
2	○○소방서 ○○119안전센터	○○차	○○○○○○	2022.7.11.~현재까지	162건 미입력 (소방경 박성식)	

16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업무 소홀

관 련 규 정

- 지방재정법 제47조(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업무추진비의 집행)

지적사항 요약

○ ○○○○○에서는 일상경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소홀히 함.

- ① ○○○○○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구매 등 시책사업과는 무관한 개인물품 구입과 일부 여성공무원을 위한 선물구입에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함.(총 2건)

연번	부서명	물품 구매 일자	제목	집행금액	사용항목 (사업비)	비고
1	○○○○○○	2020-12-28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 구매	1,042,500원	시책운영비	
2	○○○○○○	2021-03-08	2021년 상반기 여성소방공무원 간담회(세계 여성의날 기념)	245,000원	시책운영비	

- ② ○○○○○에서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 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으며 또한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에 시책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품의를 받아야 하고 행사지원을 위해 참가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일반수용비로 사용하고 부서의 간담회 경비로는 집행하지 않는 등 기준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시행해야 하지만,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직원 격려와 온라인 서울한마당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집행하였고, 또한 관할 지역이 아닌 장소(은평구, 중구)에서 간담회를 실시함.(총 2건)

연번	부서명	간담회 일자	제목	장소	집행금액	집행항목	비고
1	○○○○○○	2020-06-16	2020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직원 격려 간담회	○○면옥 (○○구)	300,000원	시책업무추진비	
2	○○○○○○	2020-10-27	2020년 온라인 서울안전한마당 업무협의(카페)	○○하우스 (○○구)	98,500원	시책업무추진비	

- ③ ○○○119안전센터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하는 간담회는 접대비 3만원 이하로 집행해야 하나 직원들과의 간담회 비용을 1인 1회당 3만원을 초과한 비용을 집행함.(총 2건)

연번	부서명	간담회일자	금액	인원	1인당집행금액	장소	비고
1	○○119안전센터	2019-12-11	455,000원	13명	35,000원	○○○○○○○	
2	○○119안전센터	2020-02-12	455,000원	13명	35,000원	○○갈비	

17 일반지출 및 일상경비 집행업무 소홀

관 련 규 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45조(지출결의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발급·등록 및 사용제한)
- 지방재정법 제47조(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지적사항 요약

○ ○○○○○에서는 일상경비 지출 및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다음과 같이 소홀히 함.

- ① ○○·○○119안전센터에서는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계좌로 납기일 이내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나 담당공무원의 착오와 오류 미확인 등으로 상하수도 요금과 교통유발 분담금을 매월 납기일 이후에 입금하여 연체료가 발생하였음.(총 2건)

연번	부서명	납부일자	제목	연체금액	지적사항	비고
1	○○119안전센터	2023-01-16	2022년 11월분 상하수도요금 연체가산금 납부	7,510원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발생	
2	○○119안전센터	2022-11-29	2022년도 교통유발분담금 및 가산금 납부계획 수정보고	11,390원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발생	

- ② ○○○119안전센터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상근 직원의 형님 사망 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는 지급대상 범위가 아님에도 5만원의 부의금을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을 소홀히 함.(총 1건)

연번	부서명	지급일자	금액	대상	지급항목	비고
1	○○119안전센터	2019-12-11	50,000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③ ○○○○○·○○·○○119안전센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 결재)으로 인계인수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나 비치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히 함.(총 3건)

연번	부서명	신용카드 관리대장 비치여부	지적사항	비고
1	○○○○○○	○	담당자 변경시 비밀번호 미변경 및 인수인계 등 관리소홀	
2	○○119안전센터	×	관리대장 미비치, 인수인계 등 관리소홀	
3	○○119안전센터	×	관리대장 미비치, 인수인계 등 관리소홀	

- ④ ○○○○○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권(유가증권) 등은 상품권 수불(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수령인 자필 서명 및 담당자, 부서장 결재를 하여 사적 사용이 없도록 투명하게 관리를 하여야 하나 관리자 미결재 및 구매내역 미등록 등 관리에 소홀히 함.(총 3건)

연번	부서명	일자	금액	주요사용내역	지급항목	비고
1	○○○○○○	2019-09-04	1,000,000원	추석명절 현장직원 격려물품 (상품권) 구매비용 지출	기관업무추진비	
2	○○○○○○	2019-12-27	860,000원	연말연시 현장활동 직원 격려비용(상품권)지출	기관업무추진비	
3	○○○○○○	2021-02-16	400,000원	소방력 조정에 따른 직원 격려물품 (상품권) 구매비용 지출	기관업무추진비	

1 신축건축물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소홀

관 련 규 정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2조(소방활동 자료조사)
-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자료조사)

지 적 사 항 요약

- ○○○소방서는 신축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나, ○○○로 ○○길 ○○소재 신축건축물 등 ○○개소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미실시하는 등 신축건축물 소방활동 자료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함.
-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한 후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정리하여야 함에도 ○○동 ○○○-○○ 등 ○○개소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자료조사를 미실시하는 등 특급·1급 소방활동 자료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함.

2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 보고 누락 등 유지 관리 소홀

관 련 규 정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소방용수·지리조사 결과조치)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 재난대응과-3692(2023.02.09.)호 『2023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알림』
- 재난대응과-19899(2021.09.30.)호 『2021년 동절기(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알림』

지적사항 요약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제13조(소방용수·지리조사 결과조치),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2023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알림(재난대응과-3692, 2023.02.09.)등에 의하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연 2회(해빙기, 동절기) 소방용수시설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고 하여야 하고,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사후 조치를 취하는 등 소방관서에서는 관할구역 내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포함)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소방서 ○○○○○ 소방○ ○○○ 등 연인원 ○○○명은 2019년 9월 부터 2023년 9월 까지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일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를 조사한 후에는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하고, 고장발생 대상에 대하여는 고장발생 보고 등 사후 조치 관련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소화전 제○○○호 등 ○○○개 대상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가 누락되어 있다.
- 안전센터 등의 복무 및 근무상황 등을 기록하는 근무일지는 소방용수시설 조사부를 입력하는 119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일정 기간 후 안전센터장 등의 최종 결재로 근무일지가 완료되면 소방용수시설조사 결과를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일지 결재가 완료되기 전에 지정된 조사일정 별로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소방용수시설 근무일지 마감 기한 내에 조사결과를 입력하지 아니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 보고와 관련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3] 특별경계근무 기간중 펌프차량 화재예방순찰 미실시

관련 규정

- 재난대응과-31879(2022.08.29.)호 『2022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계획 알림』
- 재난대응과-41721(2022.12.19.)호 『2022년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알림』
- 재난대응과-1293(2023.01.13.)호 『2023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계획 알림』

지적사항 요약

- 2022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계획 알림(재난대응과-31879호, 2022.08.29.), 2022년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알림(재난대응과-41721호, 2022.12.19.), 2023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계획 알림(재난대응과-1293호, 2023.01.13.)등에 의하면 추석, 성탄절 및 연말연시,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수 있도록 (예방)화재

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대비)재난 대비 소방 대응능력 강화, (대응)상황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 활동 체계를 구축 할수 있도록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함.

- ① ○○소방서에서는 추석연휴 특별경계근무 기간중 관내 중점관리대상 등 취약 대상 펌프차량 등 예방순찰을 1일 2회(주간1, 야간1) 실시 하여야 함에도 예방순찰을 미 실시 함.
- ② ○○소방서에서는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 근무 기간중 관내 중점관리 대상 등 취약대상 펌프차량 등 예방순찰을 1일 2회(주간1, 야간1) 실시하여야 함에도 예방순찰을 미 실시 함.
- ③ ○○소방서에서는 2023년 설 연휴 특별경계 근무 기간중 관내 중점관리대상 등 취약대상 펌프 차량 등 예방순찰을 1일 2회(주간1, 야간1) 실시하여야 함에도 예방순찰을 미 실시 함.

4 펌블런스 출동 및 수당 지급업무 소홀

관 련 규 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소방청 119구급과-1274(2023.2.6.)호 “2023년 펌블런스 출동체계 운영계획 알림”
- 서울시 재난대응과-6164(2023.3.10.)호 “2023년 펌블런스 출동체계 운영 계획”
- 2023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과
“제20장 시민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 [심정지 환자 펌프차(펌블런스) 출동체계 운영]
- 서울시 소방행정과-2491(2019.1.28.)호 “출동가산금 지급기준 재알림”
- 서울시 소방행정과-23465(2019.9.3.)호 “출동간식비 집행기준 개선 알림”

지 적 사 항 요약

-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펌블런스 출동 수보를 받고 출동 중 현장에 도착하지 않고 귀소하거나, 미 출동하였음에도 근무일지 상 출동가산금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펌블런스 구급활동일지 작성을 누락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
(총 8건, 21명, 환수: 출동가산금, 금81,000원)

연번	부서명	출동일시	활동 시간	출동장소	확인결과	구급활동 일지	출동대원	출동 가산금	비고
1	○○	2023.○.○. 22:34~22:50	16분	○○○-○○	현장 도착 전 귀소	미작성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2	○○	2023.○.○. 21:50~22:00	10분	○○○-○○	현장 도착 전 귀소	미작성	○○○	3,000	
							○○○	-	
							○○○	-	
							○○○	-	
							○○○	-	

연번	부서명	출동일시	활동시간	출동장소	확인결과	구급활동일지	출동대원	출동가산금	비고
3	○○	2023.○.○. 17:26~17:40	14분	○○○-○○	현장 도착 전 귀소	미작성	○○○	-	
							○○○	-	
							○○○	-	
							○○○	-	
							○○○	-	
4	○○	2023.○.○. 19:54~20:00	6분	○○○-○○	미출동 가산금 반영	미작성	○○○	3,000	
							○○○	3,000	
							○○○	3,000	
							○○○	3,000	
5	○○	2023.○.○. 12:59~13:03	4분	○○○-○○	현장 도착 전 귀소	미작성	○○○	6,000	이후 취소 출동 추가 1건 병합
							○○○	6,000	
							○○○	6,000	
							○○○	6,000	
							○○○	6,000	
6	○○	2023.○.○. 09:34~09:50	16분	○○○-○○	현장 도착 전 귀소	미작성	○○○	3,000	
							○○○	3,000	
7	○○	2023.○.○. 15:18~15:28	10분	○○○-○○	현장 도착 전 귀소	미작성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8	○○	2023.○.○. 09:46~10:10	24분	○○○-○○	현장 도착 전 귀소	미작성	○○○	-	
							○○○	-	
							○○○	-	

5 구급출동 업무 소홀 및 출동가산금 부당 수령

관 련 규 정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급출동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출동대비),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구급업무)
- 서울시 소방행정과-2491(2019.1.28.)호 “출동가산금 지급기준 재알림”
- 서울시 소방행정과-23465(2019.9.3.)호 “출동간식비 집행기준 개선 알림”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구급출동 수보를 받고 출동 중 현장에 도착하지 않고 귀소하거나, 미 출동하는 등 현장업무를 태만히 하였음에도 근무일지 상 출동 가산금 및 출동안식비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반복적으로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총 35건, 31명, 환수: 출동가산금 / 금276,000원, 출동안식비 / 금15,000원)

연번	부서	출동일자	출동시간	귀소시간	출동장소	출동대원	부적정 내용	출동가산금 등	
								반영여부	수당
1	○○	2023.○.○.	11:38	11:40	○○○-○○	○○○ ○○○	타구급대 출동건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2명,6,000원)
2	○○	2023.○.○.	15:22	15:30	○○○-○○	○○○ ○○○ ○○○	취소건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3	○○	2023.○.○.	22:25	22:30	○○○-○○	○○○ ○○○ ○○○	타구급대 출동건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4	○○	2023.○.○.	18:37	18:45	○○○-○○	○○○ ○○○	취소건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2명,6,000원)
5	○○	2023.○.○.	17:13	17:25	○○○-○○	○○○ ○○○	취소건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2명,6,000원)
6	○○	2023.○.○.	8:18	8:25	○○○-○○	○○○ ○○○ ○○○	타구급대 출동건 미출동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7	○○	2023.○.○.	7:35	7:44	○○○-○○	○○○ ○○○ ○○○	타구급대 출동건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8	○○	2023.○.○.	12:32	12:32	○○○-○○	○○○ ○○○	취소건 미출동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2명,6,000원)
9	○○	2023.○.○.	11:17	11:21	○○○-○○	○○○ ○○○ ○○○	타구급대 출동건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10	○○	2023.○.○.	14:06	14:15	○○○-○○	○○○ ○○○	타구급대 출동건 미출동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2명,6,000원)
11	○○	2023.○.○.	9:54	10:00	○○○-○○	○○○ ○○○ ○○○	타구급대 출동건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12	○○	2023.○.○.	13:23	13:26	○○○-○○	○○○ ○○○	타구급대 출동건 미출동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2명,6,000원)
13	○○	2023.○.○.	19:24	19:30	○○○-○○	○○○ ○○○ ○○○	취소건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14	○○	2023.○.○.	12:11	12:20	○○○-○○	○○○ ○○○	취소건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2명,6,000원)
15	○○	2023.○.○.	0:12	0:15	○○○-○○	○○○ ○○○ ○○○	취소건 미출동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16	○○	2023.○.○.	8:16	8:20	○○○-○○	○○○ ○○○ ○○○	취소건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연번	부서	출동일자	출동시간	귀소시간	출동장소	출동대원	부적정 내용	출동가산금 등	
								반영여부	수당
17	○○	2023.○.○.	15:31	15:32	○○○-○○	○○○ ○○○ ○○○	취소건 미출동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18	○○	2023.○.○.	18:43	18:44	○○○-○○	○○○ ○○○ ○○○	취소건 미출동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19	○○	2023.○.○.	22:49	23:00	○○○-○○	○○○ ○○○ ○○○	취소건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20	○○	2023.○.○.	17:14	17:20	○○○-○○	○○○ ○○○ ○○○	취소건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21	○○	2023.○.○.	16:20	16:22	○○○-○○	○○○ ○○○	취소건 미출동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2명,6,000원)
22	○○	2023.○.○.	19:26	19:30	○○○-○○	○○○ ○○○	취소건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2명,6,000원)
23	○○	2023.○.○.	21:28	21:35	○○○-○○	○○○ ○○○	취소건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2명,6,000원)
24	○○	2023.○.○.	13:19	13:30	○○○-○○	○○○ ○○○ ○○○	취소건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25	○○	2023.○.○.	17:38	17:39	○○○-○○	○○○ ○○○ ○○○	취소건 미출동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26	○○	2023.○.○.	7:52	7:53	○○○-○○	○○○ ○○○	취소건 미출동 현장활동 없음	반영	해당없음
27	○○	2023.○.○.	10:18	10:19	○○○-○○	○○○ ○○○ ○○○	타구급대 출동건 미출동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28	○○	2023.○.○.	10:20	10:21	○○○-○○	○○○ ○○○ ○○○	타구급대 출동건 미출동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29	○○	2023.○.○.	4:39	4:40	○○○-○○	○○○ ○○○ ○○○	타구급대 출동건 미출동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출동간식비 5,000원 (3명,15,000원)
30	○○	2023.○.○.	0:13	0:15	○○○-○○	○○○ ○○○ ○○○	취소건 미출동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31	○○	2023.○.○.	16:09	16:10	○○○-○○	○○○ ○○○ ○○○	취소건 미출동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32	○○	2023.○.○.	12:45	12:48	○○○-○○	○○○ ○○○	취소건 미출동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33	○○	2023.○.○.	3:35	3:37	○○○-○○	○○○ ○○○ ○○○	취소건 미출동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34	○○	2023.○.○.	8:58	9:00	○○○-○○	○○○ ○○○ ○○○	타구급대 출동건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35	○○	2023.○.○.	17:49	17:51	○○○-○○	○○○ ○○○ ○○○	취소건 현장활동 없음	반영	3,000원 (3명,9,000원)

6 구급차량 사적 사용 및 업무처리 부적정

관 련 규 정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위반)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제2장(근무상황 관리)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출동대비),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구급업무)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 ○○·○○·○○119안전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의 자세와 의무를 망각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함.

- ① 개인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현장활동 중 부상 발생에 따른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도 지참·외출·조퇴·병가 등을 활용하여야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휴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휴가권자의 승인 없이 본인을 환자로 접수 후 출동을 편성하고 구급차량을 사적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함. (총 12건, 12명)

연번	해당 부서	환자명	신고 일자	출동 시각	귀소 시각	소요 시간	병원명	증상	부적정내용
1	○○ ○○○	○○○	2023.○.○	15:50	17:15	1:25	○○병원	눈통증	- 복무상황처리소홀 - 출동가산금체크
2	○○ ○○○	○○○	2022.○.○	16:20	18:00	1:40	○○병원	고열	- 복무상황처리소홀 - 출동가산금체크
3	○○ ○○○	○○○	2021.○.○	13:25	15:40	2:15	○○병원	어깨통증	- 복무상황처리소홀 - 출동가산금체크
4	○○ ○○○	○○○	2021.○.○	18:36	22:45	4:09	○○병원	후두부 통증	- 복무상황처리소홀 - 출동가산금체크
5	○○	○○○	2023.○.○	14:39	18:38	3:59	○○병원	발통증	- 복무상황처리소홀
6	○○	○○○	2022.○.○	17:31	19:28	1:57	○○병원	손통증	- 복무상황처리소홀 - 출동가산금체크
7	○○	○○○	2022.○.○	09:05	12:00	2:55	○○병원	손통증	- 복무상황처리소홀 - 출동가산금체크
8	○○	○○○	2022.○.○	01:58	04:27	2:29	○○병원	구토	- 복무상황처리소홀 - 출동가산금체크
9	○○	○○○	2022.○.○	20:59	00:05	3:06	○○병원	우측손등 열상	- 복무상황처리소홀
10	○○	○○○	2021.○.○	10:46	15:25	4:39	○○병원	좌측발목 통증	- 복무상황처리소홀 - 출동가산금체크 - 초과근무수당수령
11	○○	○○○	2022.○.○	13:15	15:45	2:30	○○병원	두드러기	- 복무상황처리소홀
12	○○	○○○	2023.○.○	12:36	15:58	3:22	○○병원	고열 몸살	- 복무상황처리소홀 - 출동가산금체크

②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본인을 환자로 접수하고 병원을 이용한 출동 건에 대하여 119행정정보시스템의 근무일지 시스템 상 환자 이송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체크하여 출동가산금 및 출동안식비, 진료시간 제외 없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함.
(총 15건, 환수: 금88,850원 / 출동가산금 14건, 금42,000원, 초과근무수당 1건, 금46,850원)

연번	해당부서	인원	부적정 내용	출동가산금		출동안식비		초과근무수당		환수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 ○○○	○○○	2021.○.○. 구급대원 (본인진료)	1	3,000	-	-	-	-	3,000
2	○○ ○○○	○○○	2021.○.○. 구급대원 (직원이송)	1	3,000	-	-	-	-	3,000
3	○○ ○○○	○○○	2022.○.○. 구급대원 (본인진료)	1	3,000	-	-	-	-	3,000
4	○○ ○○○	○○○	2022.○.○. 구급대원 (직원이송)	1	3,000	-	-	-	-	3,000
5	○○ ○○○	○○○	2022.○.○. 구급대원 (직원이송)	1	3,000	-	-	-	-	3,000
6	○○	○○○	2021.○.○. 진압대원 (본인진료)	-	-	-	-	1	46,850	46,850
7	○○	○○○	2022.○.○. 구급대원 (본인진료)	1	3,000	-	-	-	-	3,000
8	○○	○○○	2022.○.○. 구급대원 (직원이송)	1	3,000	-	-	-	-	3,000
9	○○	○○○	2022.○.○. 구급대원 (본인진료)	1	3,000	-	-	-	-	3,000
10	○○	○○○	2022.○.○. 구급대원 (직원이송)	1	3,000	-	-	-	-	3,000
11	○○	○○○	2022.○.○. 구급대원 (본인진료)	1	3,000	-	-	-	-	3,000
12	○○	○○○	2022.○.○. 구급대원 (직원이송)	1	3,000	-	-	-	-	3,000
13	○○	○○○	2023.○.○. 구급대원 (본인진료)	1	3,000	-	-	-	-	3,000
14	○○	○○○	2023.○.○. 구급대원 (직원이송)	1	3,000	-	-	-	-	3,000
15	○○	○○○	2023.○.○. 구급대원 (직원이송)	1	3,000	-	-	-	-	3,000
총 합계(15건, 금88,850원)										

③ 현장상황 근무자는 현장 출동을 대비하여 출동지령을 받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개인 장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 또는 소방차량의 근접거리에서 대기하여야 하나 ○○병원에 환자를 인계 후에도 소속부서로 즉시 귀소하지 않고, 이송한 환자의 진료를 대기하고 식사를 하는 등 구급출동 업무를 태만히 하여서 장시간 구급출동의 공백을 발생토록 함.(총 4건, 12명)

연번	해당 부서	신고일자	신고 시각	귀소 시각	누락 시간	환자명 (업무)	구급 대원	구급 대원	운전 요원	부적정 내용
1	○○ ○○○	2021.○.○.	18:35	22:45	4:10	○○○ (구급)	○○○	○○○	○○○	장시간 병원 대기 출동공백 발생 (18:36~22:45 /관내 출동 3건)
2	○○	2021.○.○.	10:09	15:25	5:16	○○○ (진압)	○○○	-	○○○	장시간 병원 대기 출동공백 발생 (10:09~15:25 /관내 출동 5건) 진료 후 병원 인근 식사
3	○○	2022.○.○.	20:55	00:05	3:10	○○○ (진압)	○○○	○○○	○○○	장시간 병원 대기 출동공백 발생 (20:55~00:05 /관내 출동 2건)
4	○○	2022.○.○.	09:04	12:00	2:56	○○○ (구급)	○○○	-	○○○	장시간 병원 대기 출동공백 발생

7 소방드론(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감독 업무 소홀

관련 규정

- 항공안전법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3조(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제20조(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제21조(기록관리) 제22조(고장 등의 발생보고), 제24조(실적보고)
- 서울시 재난대응과-42724(2022.12.30.)호 “2023년도 소방드론 관리·운용 계획 알림”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 ○○○○○에서는 소방드론 운영·관리·감독 업무를 다음과 같이 소홀히 함.
 - ① ○○○○○에서는 관리부서로서 소방드론 운용일지 2022.○.~2022.○.(총12건/월1회), 소방드론 주간점검일지 2022.○.○.~2022.○.○. 미작성 건 등에 대한 점검·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

연번	구분	미작성 기간	지적사항
1	소방드론 운용일지	2022.○. ~ 2022.○.	해당기간 누락 건에 대한 확인 및 실적관리 업무 소홀 (총12건/월1회/전부누락)
2	주간점검일지	2022.○.○.~ 2022.○.○.	해당기간 누락 건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감독 업무 소홀 (해당기간 전부누락)
		2022.○.○. ~ 2023.○.○.	주간점검일지 미작성(단순누락/40건)

② ○○○○○에서는 2022.○.○.~2023.○.○. 해당기간 중 소방드론 주간점검일지를 총 40건 미작성하였고, 소방드론 고장 수리 중임에도 주간점검일지에 양호로 기록하는 등 소방드론 운영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연번	구분	미작성(오작성) 기간	지적사항
1	주간점검일지	2022.○.○. ~ 2023.○.○.	주간점검일지 미작성(단순누락/40건)
2	주간점검일지	2022.○○.○○.	소방드론(MAVIC MINI) 고장 수리 중 (2022.○○.○○.-○○.○○.) 임에도 주간점검일지 상 양호로 작성

8 구조대원 교육훈련 업무 소홀

관련 규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0조, 같은 규정 제11조, 제12조
- 서울시 재난대응과 연도별 구조대원 교육·훈련계획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 ○○○○○에서는 구조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① ○○소방서 ○○○○○에서는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등 계획 수립단계에서 현장 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훈련부서에 ‘안전영향평가’ 를 실시토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점검·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인사발령 등으로 구조대장이 변경되었음에도 일상교육담당관 지정·승인·보고 절차를 누락 하는 등 구조대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함.

〈특별구조훈련 안전영향평가 미실시 2건〉

연번	훈련부서	훈련기간	훈련장소(소재지)	훈련내용	안전영향평가
1	○○ ○○○	2021.○.○.~2021.○.○.	○○산, ○○산 일대/관내	산악사고 대응 훈련	미실시
2	○○ ○○○	2021.○.○.~2021.○.○. 2021.○.○.~2021.○.○.	○○소방서 본서 차고/관내	맨홀, 추락사고 대응 훈련	미실시

〈일상교육담당관 미지정 4건〉

연번	대상자	발령일자	근무기간	일상교육훈련 담당관 지정
1	○○○	2020.○.○.	2020.○.○.~2022.○.○.	미지정
2	○○○	2022.○.○.	2022.○.○.~2023.○.○.	미지정
3	○○○	2023.○.○.	2023.○.○.~현재까지	미지정
4	○○○	2020.○.○.	2020.○.○.~현재까지	미지정

② ○○소방서 ○○○○○에서는 신규임용 및 전입 구조대원 특별교육을 실시하면서 총 5건 (신규2, 전입3)에 대한 교육기준(7일이상 또는 35시간)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였고, 특별훈련 기간 중 근무일지 누락(12건)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미등록(23건)하는 등 기록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연번	대상자	전입일자	교육기간	교육기준	근무일지 기록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1	○○○	2019.○.○.	2019.○.○.~2019.○.○. (7일/33시간)	충족	입력	미입력
2	○○○	2019.○.○.	2019.○.○.~2019.○.○. (7일/33시간)	충족	입력	미입력
3	○○○	2019.○.○.	2019.○.○.~2019.○.○. (5일/25시간)	미충족(신규)	미입력(1건)	미입력
4	○○○	2019.○.○.	2019.○.○.~2019.○.○. (5일/31시간)	미충족(전입)	입력	미입력
5	○○○	2020.○.○.	2020.○.○.~2020.○.○. (5일/35시간)	충족	입력	미입력
6	○○○	2020.○.○.	2020.○.○.~2020.○.○. (6일/35시간)	충족	입력	미입력
7	○○○	2020.○.○.	2020.○.○.~2020.○.○. (6일/36시간)	충족	미입력(2건)	미입력
8	○○○	2020.○.○.	2020.○.○.~2020.○.○. (5일/33시간)	미충족(전입)	입력	미입력
9	○○○	2020.○.○.	2020.○.○.~2020.○.○. (5일/32시간)	미충족(신규)	미입력(5건)	미입력
10	○○○	2021.○.○.	2021.○.○.~2021.○.○. (6일/36시간)	충족	입력	미입력

연번	대상자	전입일자	교육기간	교육기준	근무일지 기록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11	○○○	2021.○.○.	2021.○.○.-2021.○.○. (5일/35시간)	충족	입력	미입력
12	○○○	2021.○.○.	2021.○.○.-2021.○.○. (5일/33시간)	미충족(전입)	미입력(1건)	미입력
13	○○○	2021.○.○.	2021.○.○.-2021.○.○. (6일/36시간)	충족	입력	미입력
14	○○○	2022.○.○.	2022.○.○.-2022.○.○. (6일/35시간)	충족	입력	미입력
15	○○○	2022.○.○.	2022.○.○.-2022.○.○. (7일/32시간)	충족	입력	미입력
16	○○○	2022.○.○.	2022.○.○.-2022.○.○. (7일/28시간)	충족	입력	미입력
17	○○○	2023.○.○.	2023.○.○.-2023.○.○. (10일/48시간)	충족	입력	미입력
18	○○○	2023.○.○.	2023.○.○.-2023.○.○. (10일/48시간)	충족	입력	미입력
19	○○○	2023.○.○.	2023.○.○.-2023.○.○. (8일/30시간)	충족	미입력(1건)	미입력
20	○○○	2023.○.○.	2023.○.○.-2023.○.○. (10일/35시간)	충족	입력	미입력
21	○○○	2023.○.○.	2023.○.○.-2023.○.○. (10일/35시간)	충족	입력	미입력
22	○○○	2023.○.○.	2023.○.○.-2023.○.○. (5일/35시간)	충족	입력	미입력
23	○○○	2023.○.○.	2023.○.○.-2023.○.○. (5일/35시간)	충족	입력	미입력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소홀 및 대상물 관리 소홀

관련 규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실태조사)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조(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등)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6조(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 市 예방과-39424(2022.11.22.)호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분류계획 알람”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에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대상물 통계 관리업무 일부를 소홀히 함.

① ○○소방서 ○○○-38363(2022. 12. 1.)호 “2023년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에 의하면 ○○소방서에서는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대상 239개소 중 144개소 (필수선정 37, 심의선정 107)를 2023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선제적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대상물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철거된 건축물을 종합감사일까지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함.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소홀 대상 >

대상명	소재지	건물구조	선정기준 (사유)	중점관리대상 등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등급	내 용
○○○	○○○○ ○○○○	지하2/지상5 0,000.0㎡	심의-5-① (한개 영업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	II	2급	철거된 대상물을 중점관리대상물로 선정(관리)

② ○○소방서 ○○○-151(2023. 1. 3.)호 “2023년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자료 조사 계획 알람” 등 연도별 통계자료 조사계획에 따라 분야별 작성 담당자를 지정하여 특정소방대상물 기본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현황 등을 조사하고 대상물 현행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 ○○○ ○○○ 소재 ○○○ ○○○ ○○○○○ 등 00개소에 대하여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을 2급으로 관리하는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각 호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등급의 특정소방대상물로 관리함.

↳ 총 00개소: 1급 → 2급대상으로 관리(00개소) / 2급 → 3급·일반대상으로 관리(00개소)

2 무상보급 제외대상(아파트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급

관 련 규 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 市 예방과-5446(2019.02.25.)호 “2019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계획 알림”
- 市 예방과-960(2020.01.10.)호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알림(강조)”
- 市 예방과-3768(2021.03.16.)호 “2021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리 개선대책 알림”
- 市 예방과-4500(2022.02.28.)호 “2022년 주택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
- 市 예방과-4390(2023.02.27.)호 “2023년 주택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대책”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지급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및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설치세대는 제외하고 소방시설이 설치된 아파트 및 기숙사 등을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무상 보급·설치해야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자 선정 및 검수확인을 소홀히 하여 소화기와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아파트 및 특정소방대상물 거주자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부적정 지급함.
(1급-00회, 2급-00회 / 총 00회)

3 지하구 현황 및 관리카드 현행화 소홀

관 련 규 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부칙<법률 제17395호, 2020. 6. 9.>
- 市 예방과-5562(2019.02.26.)호 “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알림”
- 市 예방과-3135(2020.02.05.)호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알림”
- 市 예방과-1241(2021.01.18.)호 “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 市 예방과-3168(2022.02.10.)호 “2022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 市 예방과-7114(2023.04.03.)호 “2023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추진 계획”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에서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집중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사회기반시설인 지하구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하구 도면, 소방시설, 비상연락망, 소방안전관리자 정보 등을 현행화해야 하지만 ○○통신구 등 12개 대상에 대하여는 2019년 5월 이후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자 정보 변경에 따른 현행화 작업을 미실시함.

< 지하시설물(지하구) 현행화 미실시 대상 >

연번	구분	대상물명	최종 현행화 일자	내용
1	통신구	○○통신구	2019.05.07.	반기 1회 현행화 미실시
2	통신구	○○○○통신구	2019.05.07.	반기 1회 현행화 미실시
3	통신구	○○통신구	2019.05.07.	반기 1회 현행화 미실시
4	통신구	○○통신구	2019.05.07.	반기 1회 현행화 미실시
5	통신구	○○○ ○○통신구	2019.05.07.	반기 1회 현행화 미실시
6	전력구	○○전력구	2019.05.07.	반기 1회 현행화 미실시
7	전력구	○○○○ 전력구	2019.05.07.	반기 1회 현행화 미실시
8	전력구	○○○○ 전력구	2019.05.07.	반기 1회 현행화 미실시
9	전력구	○○전력구	2019.05.07.	반기 1회 현행화 미실시
10	전력구	○○○○ 전력구	2019.05.07.	반기 1회 현행화 미실시
11	전력구	○○ 전력구	2019.05.07.	반기 1회 현행화 미실시
12	전력구	○○ 전력구	2019.05.07.	반기 1회 현행화 미실시

4]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위반 및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처리 부적정

관련 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제13조(착공신고), 제40조(과태료)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제12조(착공신고 등)
- 연도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 4.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 지도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에서는 착공신고 처리 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등급이 부적합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공사현장에 맞는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도록 보완 요구를 하거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및

제4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조치해야 하지만, 기준보다 낮은 소속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한 공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보완요구 등의 조치 없이 착공(변경)신고를 수리함.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위반 대상〉

연번	대상명 (소재지)	용도 및 구조	착공신고일 (변경신고)	기술자 배치내용										
1	○○○○○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지하1층/지상15층) 연면적 0,000.00㎡	2020.00.00.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고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해야 하나 <u>기준보다 1단계 낮은 중급기술자</u> 를 배치함. [기술자 배치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명</th> <th rowspan="2">공사업체</th> <th colspan="2">기술자 등급</th> </tr> <tr> <th>기계</th> <th>전기</th> </tr> </thead> <tbody> <tr> <td>○○○</td> <td>(주)○○○○○</td> <td>중급</td> <td>중급</td> </tr> </tbody> </table>	성명	공사업체	기술자 등급		기계	전기	○○○	(주)○○○○○	중급	중급
성명	공사업체	기술자 등급												
		기계	전기											
○○○	(주)○○○○○	중급	중급											
2	○○○○○ ○○○○○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지하4층/지상14층) 연면적 0,000.00㎡	2021.00.00.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고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해야 하나 <u>기준보다 1단계 낮은 중급기술자</u> 를 배치함. [기술자 배치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명</th> <th rowspan="2">공사업체</th> <th colspan="2">기술자 등급</th> </tr> <tr> <th>기계</th> <th>전기</th> </tr> </thead> <tbody> <tr> <td>○○○</td> <td>(주)○○○○○○○○○</td> <td>중급</td> <td>-</td> </tr> </tbody> </table>	성명	공사업체	기술자 등급		기계	전기	○○○	(주)○○○○○○○○○	중급	-
성명	공사업체	기술자 등급												
		기계	전기											
○○○	(주)○○○○○○○○○	중급	-											
3	○○○○○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지하1층/지상15층) 연면적 0,000.00㎡	2021.00.00.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고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해야 하나 <u>기준보다 2단계 낮은 초급기술자</u> 를 배치함. [기술자 배치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명</th> <th rowspan="2">공사업체</th> <th colspan="2">기술자 등급</th> </tr> <tr> <th>기계</th> <th>전기</th> </tr> </thead> <tbody> <tr> <td>○○○</td> <td>(주)○○○○○</td> <td>초급</td> <td>초급</td> </tr> </tbody> </table>	성명	공사업체	기술자 등급		기계	전기	○○○	(주)○○○○○	초급	초급
성명	공사업체	기술자 등급												
		기계	전기											
○○○	(주)○○○○○	초급	초급											
4	○○○○○ ○○○○○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지하3층/지상14층) 연면적 0,000.00㎡	2021.00.00.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고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해야 하나 <u>기준보다 1단계 낮은 중급기술자</u> 를 배치함. [기술자 배치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명</th> <th rowspan="2">공사업체</th> <th colspan="2">기술자 등급</th> </tr> <tr> <th>기계</th> <th>전기</th> </tr> </thead> <tbody> <tr> <td>○○○</td> <td>○○○○(주)</td> <td>없음</td> <td>중급</td> </tr> </tbody> </table>	성명	공사업체	기술자 등급		기계	전기	○○○	○○○○(주)	없음	중급
성명	공사업체	기술자 등급												
		기계	전기											
○○○	○○○○(주)	없음	중급											
5	○○○○○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지하2층/지상19층) 연면적 0,000.00㎡	2021.00.00.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고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해야 하나 <u>기준보다 1단계 낮은 중급기술자</u> 를 배치함. [기술자 배치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명</th> <th rowspan="2">공사업체</th> <th colspan="2">기술자 등급</th> </tr> <tr> <th>기계</th> <th>전기</th> </tr> </thead> <tbody> <tr> <td>○○○</td> <td>(주)○○○○○○○</td> <td>중급</td> <td>중급</td> </tr> </tbody> </table>	성명	공사업체	기술자 등급		기계	전기	○○○	(주)○○○○○○○	중급	중급
성명	공사업체	기술자 등급												
		기계	전기											
○○○	(주)○○○○○○○	중급	중급											

연번	대상명 (소제지)	용도 및 구조	착공신고일 (변경신고)	기술자 배치내용										
6	○○○○○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지하5층/지상14층) 연면적 0,000.00㎡	2022.00.00.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고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해야 하나 <u>기준보다 1단계 낮은 중급기술자</u> 를 배치함. [기술자 배치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명</th> <th rowspan="2">공사업체</th> <th colspan="2">기술자 등급</th> </tr> <tr> <th>기계</th> <th>전기</th> </tr> </thead> <tbody> <tr> <td>○○○</td> <td>(주)○○</td> <td>중급</td> <td>없음</td> </tr> </tbody> </table>	성명	공사업체	기술자 등급		기계	전기	○○○	(주)○○	중급	없음
성명	공사업체	기술자 등급												
		기계	전기											
○○○	(주)○○	중급	없음											

5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및 신고처리 부적정

관 련 규 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제37조(벌칙)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 연도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 4.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 지도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에서는 감리자 지정신고 및 감리원배치(변경)통보 처리 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등급, 감리현장의 명칭·소제지·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확인하고 감리원의 등급이 부적합한 경우 같은 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에 따라 공사현장에 맞는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배치하도록 보완 요구를 하거나,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의법 조치해야 하지만, 기준보다 낮은 소속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한 소방감리업체에 대한 조치 및 보완요구 등의 조치 없이 감리원배치(변경)통보를 수리함.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 위반 대상>

연번	대상명 (소제지)	용도 및 구조	배치통보일 (변경신고)	감리원 배치내용										
1	○○○○○ ○○○○○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지하4층/지상14층) 연면적 0,000.00㎡	2021.00.00.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특급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나 <u>기준보다 1단계 낮은 고급감리원(전기)</u> 을 배치함. [감리원 배치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명</th> <th rowspan="2">감리업체</th> <th colspan="2">감리원등급</th> </tr> <tr> <th>기계</th> <th>전기</th> </tr> </thead> <tbody> <tr> <td>○○○</td> <td>○○○○○○○○(주)</td> <td>특급</td> <td>고급</td> </tr> </tbody> </table>	성명	감리업체	감리원등급		기계	전기	○○○	○○○○○○○○(주)	특급	고급
성명	감리업체	감리원등급												
		기계	전기											
○○○	○○○○○○○○(주)	특급	고급											

연번	대상명 (소재지)	용도 및 구조	배치통보일 (변경신고)	감리원 배치내용										
2	○○○○○○ ○○○○○○	관광호텔 (지하2층/지상16층) 연면적 0,000.00㎡	2021.00.00.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특급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나 기준보다 2단계 낮은 중급감리원을 배치함. [감리원 배치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명</th> <th rowspan="2">감리업체</th> <th colspan="2">감리원등급</th> </tr> <tr> <th>기계</th> <th>전기</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중급</td> <td>중급</td> </tr> </tbody> </table>	성명	감리업체	감리원등급		기계	전기	○○○	○○○○○○	중급	중급
성명	감리업체	감리원등급												
		기계	전기											
○○○	○○○○○○	중급	중급											
3	○○○○○○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지하7층/지상13층) 연면적 0,000.00㎡	2023.00.00.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특급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나 기준보다 1단계 낮은 고급감리원을 배치함. [감리원 배치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명</th> <th rowspan="2">감리업체</th> <th colspan="2">감리원등급</th> </tr> <tr> <th>기계</th> <th>전기</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고급</td> <td>고급</td> </tr> </tbody> </table>	성명	감리업체	감리원등급		기계	전기	○○○	㈜○○○○○○○○	고급	고급
성명	감리업체	감리원등급												
		기계	전기											
○○○	㈜○○○○○○○○	고급	고급											

6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소홀

관련 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4.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업무 지도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에서는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대상(비감리 대상) 현장확인 시 착공신고 사항과 일치 여부 확인, 소방시설 적정 배치 등을 검토하고 최종 완공 발급한 담당자는 건축물 기본현황, 동현황, 층현황, 소방시설현황, 도면 등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 시 공사업자(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문제제목·수신자 등에 개인식별 정보를 비공개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미준수하는 등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을 소홀히 함.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등 소홀 대상>

연번	소재지	건축주	지상/지하층 (총면적)	완공일자	내용
1	○○○○○○○	○○○	지상5/지하0 (000.00㎡)	2019.00.00.	- 문서정보에 개인식별정보 표기 공개 (건축주 성명) - 자동화재탐재설비(자진설비) 설치 대상 119행정정보 시스템 미입력

연번	소재지	건축주	지상/지하층 (총면적)	완공일자	내 용
2	○○○○○○○	○○○ 외 1인	지상5/지하1 (000.00㎡)	2020.00.00.	- 완공검사 증명서를 공사업자(신청인)에게 미발급 (건축주 교부) - 문서정보에 개인식별정보 표기 공개 (건축주 성명)
3	○○○○○○○	○○○ 외 1인	지상5/지하1 (000.00㎡)	2021.00.00.	- 아파트등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완공검사증명서 미발급(미기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4] 1호 나목 - 자동화재탐재설비(자진설비) 설치 대상 119행정정보 시스템 미입력
4	○○○○○○○	○○○○○	지상5/지하1 (000.00㎡)	2021.00.00.	- 완공검사증명서 증축 사용승인동의용을 일반용으로 교부 - 소방설비설계업자 미기제
5	○○○○○○○	○○○	지상4/지하0 (000.00㎡)	2023..00.00.	- 완공검사 증명서를 공사업자(신청인)에게 미발급 (건축주 교부) - 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법정 소방시설(소화기구, 파난기구)의 종류 미확인(미기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4] 1호, 3호

7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규 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연도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 4.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 지도
9. 소방안전관리 능력제고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에서는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업무를 처리하면서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8. 소방안전관리 능력제고」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문(법적 근거 및 조치사항 등)을 발송하여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대해 관리 및 지도를 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시 법정 선임기간 및 등급별 자격요건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하지만 선임기간초과 대상에 대한 보완요구 또는 의법조치 없이 접수처리 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업무를 소홀히 함.

- ①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지만, ○○○○구 ○○○○동 000-00 소재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등 2개소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 등을 소홀히 하여 종합감사일 현재 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함.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연번	대상명	소재지	등급	소유자명	기준일자	선임일자	내 용
1	○○○○○	○○○○○○ 000-00	3급	○○○	2021.11.02.	미선임	사용승인일(증축)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2	○○○○○ ○○○○○	○○○○○○○ 00	2급	○○○	2023.05.04	미선임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 ② ○○○○구 ○○○○○길 00 소재 신축건축물 등 5개소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시 법정 선임기간 확인을 소홀히 하여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접수함.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연번	대상명	소재지	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사용승인일	선임일자	내 용
1	○○○○○	○○○○○○ 00	2급	○○○	2023.02.17.	2023.03.24.	선임기한 초과 접수 (5일)
2	○○○○○ ○○○○○	○○○○○○ 00-00	3급	○○○	2023.01.06.	2023.02.10.	선임기한 초과 접수 (5일)
3	○○○○○	○○○○○○ 00	3급	○○○	2022.02.18.	2022.04.04.	선임기한 초과 접수 (15일)
4	○○○○○	○○○○○○ 0-00	2급	○○○	2022.02.02.	2022.03.15.	선임기한 초과 접수 (11일)
5	○○○○○	○○○○○○ 00	2급	○○○	2019.12.16.	2020.02.13.	선임기한 초과 접수

8 의료시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관 련 규 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2조(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해임 관리 등)
- 市 예방과-40926(2022.12.08.)호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 시행에 따른 검사지도 업무 관련 직무회의 결과 알림”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대상에 해당되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선임 안내를 통하여 건축물의 완공일(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물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야 하지만, ○○구 ○○동 000-00 소재 요양병원 등 2개소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여부에 대한 확인 및 안내를 소홀히 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미선임함.

〈 의료시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대상 〉

연번	소재지	건축주	지상/지하층 (총면적)	완공일자	지적내용
1	○○동 000-00	○○○ ○○○○○○○	지상4/지하1 (0,000.00㎡)	2019.00.00.	- 의료시설(완공증명서 교부 대상) 보조자 미선임
2	○○동 000-00	○○○	지상7/지하1 (0,000.00㎡)	2022.00.00.	- 의료시설(완공증명서 교부 대상) 보조자 미선임

9 다중이용업소 수시 소방안전교육 업무처리 소홀

관련 규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99호)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과에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해 적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과(○○○○팀)에 통보하여야 하나, 수시교육 대상자 미통보로 교육대상자가 수시교육을 미이수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연번	대상명	소재지	위반내용 (위반조항)	적발일	통보일 (예방과→소방행정과)	교육이수일
1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제9조제1항) 과태료부과	2021.02.25.	미통보	미이수
2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제9조제1항) 과태료부과	2021.03.19.	미통보	미이수
3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제9조제1항) 과태료부과	2021.03.25.	미통보	미이수

연번	대상명	소재지	위반내용 (위반조항)	적발일	통보일 (예방과⇒ 소방행정과)	교육이수일
4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제11조)	2021.05.10.	미통보	미이수
5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제11조)	2021.05.26.	미통보	미이수
6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제9조제1항) 과태료부과	2021.05.26.	미통보	미이수
7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제11조)	2021.07.02.	미통보	미이수
8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제9조제1항) 과태료부과	2021.08.26.	미통보	미이수
9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제9조제1항) 과태료부과	2021.09.09.	미통보	미이수
10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제9조제1항) 과태료부과	2021.10.26.	미통보	미이수
11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제9조제1항) 과태료부과	2021.10.26.	미통보	미이수
12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제9조제1항) 과태료부과	2021.10.26.	미통보	미이수
13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제9조제1항) 과태료부과	2021.11.16.	미통보	미이수
14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제9조제1항) 과태료부과	2021.11.16.	미통보	미이수
15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제10조)	2021.12.27.	미통보	미이수
16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제11조)	2022.02.24.	미통보	미이수
17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제9조제1항) 과태료부과	2022.04.05.	미통보	미이수
18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제9조제1항) 과태료부과	2022.04.15.	미통보	미이수

10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 소홀

■ 관련 규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본부 예방과-2798(2020.02.03.)호 “2020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알림”
- 본부 예방과-3373(2021.02.08.)호 “2021년 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 본부 예방과-3489(2022.03.04.)호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 본부 예방과-2713(2023.02.13.)호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알림”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에서는 연도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자체 추진계획 미수립 및 다중이용업소 위험도별 등급을 재분류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 미통보, 민·관합동훈련 미실시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을 소홀히 함.

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2020년~2021년)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다중이용업소 위험도별 등급 재분류 결과(2020년~2022년)를 해당 부서에 알리지 않아 해당연도에 현행화된 D·E급 다중이용업소 소방훈련(민·관합동훈련 및 도상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을 소홀히 함.

연번	연도	안전관리 집행		위험도별 재분류	
		자체계획	부서 통보	본부 보고	부서 통보
1	2020년	미수립	미통보	재분류 결과보고	미알림
2	2021년	미수립	미통보	재분류 결과보고	미알림
3	2022년	수립	미통보	재분류 결과보고	미알림

② 재난관리과 소방훈련 기본계획(2021년~2022년)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E급 대상(2022년 ○○○개소, 2021년 ○○○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훈련 미실시 및 관할 펌프차량을 동원하여 실시한 대상 중 펌프차량 운행기록이 없거나 대상 방문이 없었음에도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현지적응훈련 관리)에 실시한 것으로 기록 관리하는 등 소방훈련 대상관리를 소홀히 함.

< 2022년 다중이용업소 E급 대상 민·관 합동훈련 미실시 현황 >

연번	관할	대상	소재지	위험 등급	훈련일시	
					상반기	하반기
1	○○○○○	○○○○○○○	○○○○○○○	E	2022.06.16.	미실시 (2팀)
2	○○○○○	○○○○○○○	○○○○○○○	E	2022.06.17.	미실시 (2팀)
3	○○○○○	○○○○○○○	○○○○○○○	E	2022.05.11. 13:30~14:10	2022.12.23. 14:00~15:00 (펌프차미방문)
4	○○○○○	○○○○○○○	○○○○○○○	E	2022.06.17.	미실시 (2팀)
5	○○○○○	○○○○○○○	○○○○○○○	E	2022.6.24. 14:40~15:20	미실시 (3팀)
6	○○○○○	○○○○○○○	○○○○○○○	E	미실시 (1팀)	미실시 (1팀)
7	○○○○○	○○○○○○○	○○○○○○○	E	미실시 (2팀)	미실시 (2팀)
8	○○○○○	○○○○○○○	○○○○○○○	E	2022.05.16. 19:00~20:00 (펌프차미출소)	미실시 (1팀)
9	○○○○○	○○○○○○○	○○○○○○○	E	미실시 (2팀)	미실시 (2팀)

연번	관할	대상	소재지	위험 등급	훈련일시	
					상반기	하반기
10	○○○○○	○○○○○○○	○○○○○○○	E	미 실시 (1팀)	미 실시 (1팀)
11	○○○○○	○○○○○○○	○○○○○○○	E	미 실시 (3팀)	미 실시 (3팀)
12	○○○○○	○○○○○○○	○○○○○○○	E	미 실시 (2팀)	미 실시 (2팀)
13	○○○○○	○○○○○○○	○○○○○○○	E	미 실시 (3팀)	미 실시 (3팀)
14	○○○○○	○○○○○○○	○○○○○○○	E	미 실시 (3팀)	미 실시 (3팀)

< 2021년 다중이용업소 E급 대상 민·관 합동훈련 미 실시 현황 >

연번	관할	대상	소재지	위험 등급	훈련일시	
					상반기	하반기
1	○○○○○	○○○○○○○	○○○○○○○	E	2021.4.26. 12:05-12:20	미 실시 (3팀)
2	○○○○○	○○○○○○○	○○○○○○○	E	2021.5.26.	미 실시 (1팀)
3	○○○○○	○○○○○○○	○○○○○○○	E	2021.5.21. 10:38-12:45	미 실시 (3팀)
4	○○○○○	○○○○○○○	○○○○○○○	E	미 실시 (1팀)	미 실시 (3팀)
5	○○○○○	○○○○○○○	○○○○○○○	E	2021.06.23.	미 실시 (2팀)
6	○○○○○	○○○○○○○	○○○○○○○	E	2021.06.22.	미 실시 (2팀)
7	○○○○○	○○○○○○○	○○○○○○○	E	미 실시 (2팀)	2021.09.03. 13:30-14:30
8	○○○○○	○○○○○○○	○○○○○○○	E	미 실시 (2팀)	2021.09.03. 10:00-11:20
9	○○○○○	○○○○○○○	○○○○○○○	E	2021.06.22.	미 실시 (2팀)
10	○○○○○	○○○○○○○	○○○○○○○	E	미 실시 (2팀)	2021.09.03. 13:30-14:30
11	○○○○○	○○○○○○○	○○○○○○○	E	2021.06.22.	미 실시 (2팀)
12	○○○○○	○○○○○○○	○○○○○○○	E	미 실시 (2팀)	신축공사
13	○○○○○	○○○○○○○	○○○○○○○	E	미 실시 (2팀)	신축공사
14	○○○○○	○○○○○○○	○○○○○○○	E	미 실시 (1팀)	2021.10.28. 19:00-20:00 (펌프차 미출소)
15	○○○○○	○○○○○○○	○○○○○○○	E	미 실시 (1팀)	2021.10.28. 19:00-20:00 (펌프차 미출소)

연번	관할	대상	소재지	위험 등급	훈련일시	
					상반기	하반기
16	○○○○○	○○○○○○○	○○○○○○○	E	미 실시 (1팀)	2021.10.28. 19:00~20:00 (펌프차 미출소)
17	○○○○○	○○○○○○○	○○○○○○○	E	미 실시 (1팀)	2021.10.28. 19:00~20:00 (펌프차 미출소)
18	○○○○○	○○○○○○○	○○○○○○○	E	미 실시 (1팀)	2021.10.28. 19:00~20:00 (펌프차 미출소)
19	○○○○○	○○○○○○○	○○○○○○○	E	미 실시 (1팀)	2021.10.28. 19:00~20:00 (펌프차 미출소)

11 화재안전조사자 실무교육 소홀

관 련 규 정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6조(화재안전조사자의 교육 등)
- 본부 예방과-3896(2019.02.08.)호 “소방특별조사 전문성 향상 계획 알림”
- 본부 예방과-3208(2020.02.06.)호 “소방특별조사요원 전문성 향상 계획 알림”
- 본부 예방과-5335(2021.03.08.)호 “2021년도 소방특별조사요원 전문성 향상 계획 알림”
- 본부 예방과-21085(2022.04.04.)호 “소방특별조사요원 역량 및 전문성 향상 계획 알림”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과에서는 화재안전조사자 자체 실무교육을 실시하면서 분기별 4시간 이상 실무교육 미실시 및 이수시간 미달 등 실무교육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연번	일시	장소	참석자	지적사항
1	2019년	-	-	2019년 3분기 실무교육 미실시
2	2019년	-	-	2019년 4분기 실무교육 미실시
3	2020.02.26.(수) 14:00~15:30	○○○○타워 *현장실습	예방과장 등 20명	실무교육 이수시간 미달(2시간30분) 및 교육시간 민원업무 처리(출장 등) - ○○○, ○○○ 13:00~17:00(민원처리) - ○○○, ○○○, ○○○, ○○○ (출장내역 없음)
4	2020.06.23.(화) 09:00~10:00	○층 회의실 및 본서 기계실	검사지도팀장 20명	실무교육 이수시간 미달(3시간)

연번	일시	장소	참석자	지적사항
5	2020년	-	-	2020년 3분기 실무교육 미실시
6	2020년	-	-	2020년 4분기 실무교육 미실시
7	2021년	-	-	2021년 1분기 실무교육 미실시
8	2022년	-	-	2022년 1분기 실무교육 미실시
9	2022년	-	-	2022년 2분기 실무교육 미실시

12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소홀

관 련 규 정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같은 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1조(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과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접수 대상에 대하여 설계도서 검토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 ○○○구 ○○○로○○길 00 소재 ○○○ 등 ○○○개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설계도서 검토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 부적정,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미첨부, 피난안내 영상물 설치 누락 등 보완요구 사항이 있었음에도 조치없이 처리함.

연번	대상	소재지	완비증명서 (발급일)	영업장 현황	지적내용
1	○○○○○○	○○○○○	20○○.○○.○○.	6/1층 1,498.26㎡ 중 지하 1층 258.98㎡	- 화재배상책임보험 재산상(대물) 손해 가입내역이 1사고당 5억원으로 보험금액 미충족
2	○○○○○○	○○○○○	20○○.○○.○○.	6/1층 1,564.62㎡ 중 지하 1층 107.38㎡	- 피난안내영상물 설치수량이 완비증명서(1개)와 설치도면(3개)과 상이함
3	○○○○○○	○○○○○	20○○.○○.○○.	6/2층 2,372.07㎡ 중 지하 1층 208.98㎡	- 완비증명서 발급시 피난안내영상물 수량 누락 (19개소→1개소) 및 설치도면 미첨부
4	○○○○○○	○○○○○	20○○.○○.○○.	3/0층 192.75㎡ 중 지상 2, 3층 120.66㎡	- 완비증명서 발급일 이후 소방안전교육 이수 (20○○.○○.○○.)
5	○○○○○○	○○○○○	20○○.○○.○○.	5/1층 1,177.77㎡ 중 지상 3, 4층 329.10㎡	- 3, 4층 주방 연기 감지기 부적응 - 4층 보일러실 감지기 및 헤드 누락(도면)
6	○○○○○○	○○○○○	20○○.○○.○○.	4/1층 639.88㎡ 중 지상 2, 3층 213.96㎡	- 완비증명서 발급 이후 전기안전 점검 (20○○.○○.○○.) 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완비증명서 유도표지 설치수량(22개) 누락

연번	대상	소재지	완비증명서 (발급일)	영업장 현황	지적내용
7	○○○○○○	○○○○○	20○○.○○.○○.	4/1층 868.39㎡ 중 지상 4층, 111.61㎡	- 전기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미첨부 - 구획된 실(6개소) 차동식 감지기 설치 부적정(도면)
8	○○○○○○	○○○○○	20○○.○○.○○.	5/1층 869.75㎡ 중 지하 1층 192.13㎡	- 완비증명서 발급시 피난안내영상물 수량 누락 및 설치도면 미첨부
9	○○○○○○	○○○○○	20○○.○○.○○.	8/2층 2,664.46㎡ 중 지상 4층 171.00㎡	- 기계실 감지기 누락(도면)
10	○○○○○○	○○○○○	20○○.○○.○○.	5/1층 1,498.56㎡ 중 지하 1층 97.90㎡	- 완비증명서 발급시 피난안내영상물 수량 누락 및 설치도면 미첨부
11	○○○○○○	○○○○○	20○○.○○.○○.	5/1층 1,498.56㎡ 중 지하 1층 147.25㎡	- 완비증명서 발급시 피난안내영상물 누락(5개소)
12	○○○○○○	○○○○○	20○○.○○.○○.	6/1층 1,090.64㎡ 중 지하 1층 174.00㎡	- 완비증명서 발급시 피난안내영상물 수량 누락

13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관련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규 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같은 법 제58조(벌칙) 및 제61조(과태료)
-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구 ○○로○○길 ○○ 소재 ○○빌딩 등 ○개소는 자체점검(종합, 작동) 실시 결과 보고서 및 이행완료보고서 제출을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였으나, 법정 제출기한 등 적정 여부에 대한 민원 서류 검토와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함.

연번	대상명	소재지	점검일자 (배치통보)	제출일자 (접수일자)	지 적 내 용
1	○○○○○○	○○○○○	2021.05.11. ~2021.05.13. (관계인 점검)	2021.06.02. (2021.06.06.)	- 2021년 작동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2021.05.25.) 내 미제출 ※ 8일 지연 보고
2	○○○○○○	○○○○○	2021.05.08. ~2021.05.15. (관계인 점검)	2021.06.25. (2021.07.10.)	- 2021년 작동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2021.05.26.) 내 미제출 - 보고서 제출을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제출 (2021.06.25.)로 사업소 접수 지연 ※ 30일 지연 보고

연번	대상명	소재지	점검일자 (배치통보)	제출일자 (접수일자)	지 적 내 용
3	○○○○○○	○○○○○	2021.07.20. (관계인 점검)	2021.08.18. (2021.08.18.)	- 2021년 작동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2021.07.29.) 내 미제출 ※ 20일 지연 보고
4	○○○○○○	○○○○○	2021.11.12. (관계인 점검)	2021.11월 (2022.01.07.)	- 2021년 작동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2021.11.23.) 내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보고서 제출시 제출 일자까지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보고서가 제출 되었음에도 보완요구 및 즉시 접수처리하지 않아 법정기한 내 적정 제출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함 ※ 56일 지연 접수
5	○○○○○○	○○○○○	2023.02.14. (2023.02.15.)	2023.02.28. (2023.02.28.)	- 2023년 종합점검 소방시설 등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 2023.02.28.~2023.03.19.까지 이행 조치하고, 이행완료 보고를 2023.03.31. 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행완료 보고서를 2023.04.10. 보고함 ※ 10일 지연 보고

14 자체점검(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 민원처리 소홀

관 련 규 정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 본부 예방과-10932(2016.0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 지침 알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2.12.01.) 자체점검 면제·연기 조항 신설로 기존 업무지침 중 유예(신청)부분 폐지

지 적 사 항 요약

- ○○○소방서 ○○○과에서는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에 대해 지연 접수 및 유예신청 결과 지연 통지 등 자체점검(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신청 민원업무 처리를 소홀히 함.

연번	구분	대상명	소재지	신청일 (사업소접수)	유예결과 통지일	유예기간	승인 여부	지적사항
1	종합	○○○○○○	○○○○○	2020.02.05. (2020.02.05.)	2020.02.24.	2020.02.24. ~2020.03.31.	승인	유예신청 결과 14일 지연 통지 및 수기결재 누락
2	종합	○○○○○○	○○○○○	2020.02.12. (2020.02.12.)	2020.02.24.	2020.02.24. ~2020.03.31.	승인	유예신청 결과 8일 지연 통지 및 수기결재 누락
3	종합	○○○○○○	○○○○○	2020.03.12. (2020.03.12.)	2020.04.08.	2020.03.12. ~2021.03.12.	승인	유예신청 결과 22일 지연 통지 및 수기결재 누락
4	작동 선임	○○○○○○	○○○○○	2020.12.28. (2020.12.28.)	2021.01.11.	2020.12.28. ~2021.12.27.	승인	유예신청 결과 11일 지연 통지 수기결재 누락, 수기결재 누락

연번	구분	대상명	소재지	신청일 (사업소접수)	유예결과 통지일	유예기간	승인 여부	지적사항
5	작동	○○○○○○	○○○○○	2021.02.08. (2021.02.18.)	2021.02.19.	2021.02.19. ~2022.01.31.	승인	유예신청 접수 10일 지연 및 결과 8일 지연 통지, 수기결제 누락
6	작동	○○○○○○	○○○○○	2021.03.16. (2021.03.23.)	2021.03.25.	2021.03.24. ~2021.05.30.	승인	유예신청 접수 7일 지연 및 결과 6일 지연 통지
7	종합	○○○○○○	○○○○○	2021.08.31. (2021.09.06.)	2021.09.24.	2021.09.24. ~2022.02.28.	승인	유예신청 접수 6일 지연 및 결과 21일 지연 통지
8	작동	○○○○○○	○○○○○	2022.09.05. (2022.09.13.)	2022.09.14.	2022.09.05. ~2023.03.31.	승인	유예신청 접수 8일 지연 및 결과 6일 지연 통지, 수기결제 누락
9	작동	○○○○○○	○○○○○	2022.10.07. (2022.10.13.)	2022.10.21.	2022.10.17. ~2023.02.2.	승인	유예신청 접수 6일 지연 및 결과 9일 지연 통지, 수기결제 누락
10	작동	○○○○○○	○○○○○	2022.10.25. (2022.10.28.)	2022.11.07.	2022.10.25. ~2022.12.02.	승인	유예신청 접수 3일 지연 및 결과 10일 지연 통지, 수기결제 및 민원문서 표시인 누락
11	작동	○○○○○○	○○○○○	2022.11.14. (2022.11.16.)	2022.11.25.	2022.11.14. ~2023.01.31.	승인	유예신청 접수 2일 지연 및 결과 8일 지연 통지, 수기결제 및 민원문서 표시인 누락
12	작동	○○○○○○	○○○○○	2023.01.16. (2023.01.17.)	2023.01.30.	2023.01.16. ~2023.12.31.	승인	유예신청 접수 1일 지연 및 결과 11일 지연 통지, 수기결제 및 민원문서 표시인 누락

15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부과 및 감경 처리 부적정

관 련 규 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착공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과에서는 소방시설업체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태만에 대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 부과 차수 적용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하는 등 과태료 부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① 과태료 감경에 대한 내부검토 과정없이 2분의 1 감경 및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등록사항 변경신고 태만)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대상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연번	대상명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사항	지적사항
			1차	2차		
1	○○○○○○	○○○○○	2022.03.22.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위반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에 소방 시설공사 착공(소방기술자 변경) 신고 누락으로 적발하여 자체 조사결과 (2021.03.17.) 과태료 600,000원 결정 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의견제출 기간 중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2021.03.20.) - 의견제출에 따른 자체 내부검토 절차 없이 과태료(300,000원)를 2분의 1을 감경하여 부적정하게 부과함. ※ 사전통지 기간 중 납부(금240,000원)
2	○○○○○○	○○○○○	2022.02.17.	2022.10.20.	등록사항 (기술인력) 변경신고 태만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에 등록 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 태만 2차 위반 으로 적발하였으나, 과태료 처분시 2차 위반 과태료 금액 100만원이 아닌 1차 위반 과태료 금액 60만원으로 부적정 하게 과태료를 부과함. ※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 행정처분 내역은 100만원으로 입력

②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에도 과태료 처분 대상에 대한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적정하게 감경하여 부과함.

연번	대상명	소재지	과태료(만원)		위반사항	지적사항
			금액	감경		
1	○○○○○○	○○○○○	100	50	지하○층 ○○ 계단실 물품 적치 (현지시정)	-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2022.01.19.)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면서 물품 적치에 대한 현지시정으로 2분의 1을 감액하여 부과(500,000원) 하였으나,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 시스템(총괄 과세조회)에서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감경 처리함. ※ 과태료 체납(2019.11.13. / 1건)
2	○○○○○○	○○○○○	500	250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위반 (승인을 받지 않음)	- 위험물 저장 취급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취급(2023.03.15.)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면서 현장에서 현지시정으로 2분의 1을 감액하여 부과(2,500,000원)하였으나,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 시스템(총괄 과세조회)에서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감경 처리함. ※ 과태료 체납(2022.02.07. / 1건)

16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등 민원처리 부적정

관 련 규 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사용 중지 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
- 같은 법 제39조(과태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9조(완공검사)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3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
- 소방재난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9.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지도”

지 적 사 항 요약

○ ○○○소방서 ○○○과에서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신고서를 접수 처리하면서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변경허가(완공) 통지 등의 민원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① ○○○구 ○○○로 ○○○ 소재 ○○○○○ 옥내탱크저장소 사용중지 신고서를 접수 처리하면서 신고기한 미준수 등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함.

연번	대상명	소재지	사용중지 신고일자	사용중지 기간(사유)	지 적 내 용
1	○○○○○○	○○○○○	2022.10.11. ※사업소접수 (2022.10.11. 16:57) ※신고수리 처리 결과 통보 (2022.10.18.)	2022.10.15. ~2030.12.31. (발전기, 보일러 사용연료 변경)	발전기, 보일러 사용연료 도시가스 변경으로 사용중지 신고한 대상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위험물의 제거, 출입통제 등의 안전조치가 적합한지에 대한 현장확인(2022.10.18.) 후 신고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면서 사용중지 기간을 신고한 기간과 다르게 별도 사용 재개일 또는 용도폐지일까지로 임의변경하여 부적정하게 통보함

② ○○○구 ○○○로 ○○○ 등 ○개소에 대해 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승인 결정 통보시 가사용승인신청에 대한 내용 누락 및 중요대상 간부 복수복명제 미이행 등 민원처리를 소홀히 함.

연번	대상명	소재지	허가통보 (완공통보)	신청내용	지 적 내 용
1	○○○○○○	○○○○○	2020.02.18.	휘발유 배관 32.6m 신설	- 휘발유 배관 철거 후 신설 시공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 승인 처리 회신시 가사용승인신청 관련 내용 누락 통보 및 간부복수복명제 미이행 (허가)

연번	대상명	소재지	허가통보 (완공통보)	신청내용	지 적 내 용
2	○○○○○○	○○○○○	2021.07.02. (2021.07.28.)	주유기 4대 교체 급유기 단식 1대 신설 송유배관 85m 증설 세차기 1대 교체	- 주유기 교체 및 배관 증설 등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 승인 처리 회신시 가사용승인신청 관련 내용 누락 통보 및 간부복수복명제 미이행(허가) - 간부복수복명제 미이행(완공) 및 완공 검사합격확인증이 아닌 완공검사필증으로 교부
3	○○○○○○	○○○○○	2021.08.10. (2021.08.23.)	주유기 2대 교체 품명변경 휘발유 10,000L 1기 ⇒ 경유 10,000L 1기 송유배관 44m 증설	- 주유기 교체 및 배관 증설 등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 승인 처리 회신시 가사용승인신청 관련 내용 누락 통보 - 간부복수복명제 미이행 (허가 및 완공) -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이 아닌 완공검사 필증으로 교부
4	○○○○○○	○○○○○	2022.05.18. (2022.05.25.)	2층 건물(필로티 구조) 및 계단 신설 ⇒ 49.44㎡ 증축	- 변경허가 신청시 가사용승인신청 (2022.05.16.)을 하였으나, 미접수 및 가사용승인 여부 미통지 - 완공검사 간부복수복명제 미이행(담당자 단독확인)
5	○○○○○○	○○○○○	2022.08.12. (2022.08.18)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변경 ⇒ 4복식 셀프 2대 ⇒ 6복식 셀프 2대 ⇒ 감시대 모니터, 감시 카메라, 방송설비 등	- 셀프용 주유기 교체 및 감시대 설치 등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 승인 처리 회신시 가사용승인신청 관련 내용 누락 통보 - 간부복수복명제 미이행 (허가 및 완공)
6	○○○○○○	○○○○○	2022.08.16. (2022.09.05.)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변경(2대) 경유 10,000L 1기 ⇒ 휘발유 10,000L 1기 (지정수량 650→690) ⇒ 감시대 모니터, 감시 카메라, 방송설비 등	- 주유기 교체 등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변경 허가 승인 처리 회신시 가사용승인신청 관련 내용 누락 통보 - 간부복수복명제 미이행 (허가 및 완공) - 완공검사 확인시 계시관 정비내역 불량 미조치

17 소방시설업 등 일제점검 소홀

관 련 규 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감독)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감독)
-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05. 소방관련업체 지도관리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과에서는 ○○로○○길 ○○ 소재 ○○○○ 등 ○개소는 소방시설관련업체 일제점검시(2019년~2022년) 중점 확인사항인 등록기준 미달, 등록사항 변경신고 태만 및 소방기술자 이증취업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소홀히 함.

연번	업체명 (업종)	소재지	일제점검		지적사항
			일자	결과	
1	○○○○○	○○○○○	2020.08.13.	적합	- 2020년 일제점검시 보조인력 해임(2020.04.11.) 변경신고 여부 확인 소홀 ※2021년 일제점검시 위반사항 적출(2021.10.01.)
2	○○○○○	○○○○○	2019.09.04.	적합	- 2019년 일제점검시 보조인력 해임(2019.05.18.) 변경신고 여부 및 주 인력 등록기준 미달(2019.05.19.~2021.01.11.) 확인 소홀 ※2021년 일제점검시 위반사항 적출(2021.10.26.)
			2020.08.18.	적합	- 2020년 일제점검시 보조인력 해임(2019.05.18.) 변경신고 여부 및 주 인력 등록기준 미달(2019.05.19.~2021.01.11.) 확인 소홀 ※2021년 일제점검시 위반사항 적출(2021.10.26.)
3	○○○○○	○○○○○	2020.08.14.	적합	- 2020년~2021년 일제점검시 보조인력 이증취업자에 대한 건강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가입이력 확인 소홀 - 이증취업자 구약식 처분(2022.07.25.) (근무기간: ○○건설 2002.10.01.~2022.01.18. / ○○○마트 2014.06.01.~2022.01.18.) ※한국소방시설협회 위반사실 통보(2022.01.19.)
			2021.10.01.	적합	
4	○○○○○	○○○○○	2021.10.19.	적합	- 2021년 일제점검시 보조인력 해임(2021.07.12.) 변경신고 여부 확인 소홀 ※한국소방시설협회 위반사실 통보(2022.01.19.)
5	○○○○○	○○○○○	2022.09.15.	적합	- 2022년 일제점검시 보조인력 해임(2022.07.31.) 변경신고 여부 확인 소홀 ※한국소방시설협회 위반사실 통보(2022.11.24.)
6	○○○○○	○○○○○	2022.09.27.	적합	- 2022년 일제점검시 주인력 해임(2022.05.08.) 변경신고 여부 확인 소홀 ※한국소방시설협회 위반사실 통보(2022.11.03.)

1 화재발생대상 화재조사보고 규정 위반 등 사후조치 소홀

관 련 규 정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조사결과 보고)
- 2019년~2023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현장대응행정편 제17항 화재·안전사고 조사 전문화 및 통계관리

지 적 사 항 요약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는 화재 인지로부터 30일 이내(정확한 조사기간 필요시 50일 이내), 긴급상황 보고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일반화재는 화재 인지로부터 15일 이내에 화재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규정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시 감정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① ○○소방서 ○○○○단에서는 2020.10.25. ○○○○로○○길 ○소재 건물 등 ○○건의 화재 발생 대상에 대하여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의 화재조사결과 보고 기한인 15일을 초과하여 보고하는 등 화재조사 결과 보고와 관련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 ②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대상, 위험물제조소 등 에서 재산피해 200만원 이상 및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여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조사와 동시에 화재발생 특정대상물에 대하여 1차 소방안전관리 실태 등 소방관계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조사 하여야 하고, 1차 조사결과 2차 조사가 필요한 경우 예방과(위험물안전 팀장, 사법조사담당 등)에 통보하여 2차 확인조사 토록 하여야 하나, 2019.12.19. 화재발생 ○○○등 업소 ○○개소에 대하여 1차 조사를 미실시하는 등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함.

1	<p>○ 보이는 소화기 설치수량 및 상세정보 등 미입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에서는 설치가 완료된 보이는 소화기에 대해서는 설치지역을 확인하여 관리카드를 신규작성 및 재정비하고, 보이는 소화기 유지·보수사항을 확인하여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소방안전지도에 등록해야 하지만 보이는 소화기 신규·이전설치 대상에 대한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업무를 소홀히 하여 ○○구 ○○로○●길 ○●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등 ○○개소에 대해 설치수량, 용량 및 상세정보 등을 미입력 관리함. (총 ○○개소) <p>【현지조치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입력된 보이는 소화기 설치 수량 등 상세정보는 입력 관리 및 소방안전지도에 반영하기 바람. 																					
2	<p>○ 119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데이터 정비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과에서는 ○○구 ○○로○●길 소재 근린생활시설 등 ○○개소에 대하여 119행정정보시스템에 대상물을 입력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소홀히 하여 소방대상물의 건물명을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 관리함. (총 ○○개소) <p>【현지조치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대상물의 건물명을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대상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동변환 기능 활용하여 주소 값으로 변경. ※ 예시) 홍길동건물 ⇒ ○○동1-1건물 / 자동변환 기능 활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기존대상물) 예방정보>소방대상물관리>특정소방대상물관리>특정소방대상물 조회/변경 (건축허가동의 등록) 예방정보>민원접수관리>소방설치신고>건축민원 신고처리</p> </div>																					
3	<p>○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현황 및 위험물관리자 선임정보 관리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과에서는 제조소등 현황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정보에 대한 현행화 정보를 미반영하여 용도폐지 된 주유취급소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로 관리하는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현황과 위험물관리자 선임정보 관리를 소홀히 함. (총 ○개소) <p style="text-align: center;"><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현황 관리소홀 대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연번</th> <th>대상물명</th> <th>소재지</th> <th>대상물 관리번호</th> <th>층정보 (지하/지상층)</th> <th>연면적 (㎡)</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td> <td>○○○○○○</td> <td>○○○○○○</td> <td>지하1/지상2</td> <td>457.00</td> <td>- 용도폐지(2022.5.14.)된 주유취급소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로 관리</td> </tr> <tr> <td>2</td> <td>○○○○○○</td> <td>○○○○○○</td> <td>○○○○○○</td> <td>지하1/지상2</td> <td>477.92</td> <td>- 용도폐지(2018.6.11.)된 주유취급소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로 관리</td> </tr> </tbody> </table>	연번	대상물명	소재지	대상물 관리번호	층정보 (지하/지상층)	연면적 (㎡)	내 용	1	○○○○○○	○○○○○○	○○○○○○	지하1/지상2	457.00	- 용도폐지(2022.5.14.)된 주유취급소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로 관리	2	○○○○○○	○○○○○○	○○○○○○	지하1/지상2	477.92	- 용도폐지(2018.6.11.)된 주유취급소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로 관리
연번	대상물명	소재지	대상물 관리번호	층정보 (지하/지상층)	연면적 (㎡)	내 용																
1	○○○○○○	○○○○○○	○○○○○○	지하1/지상2	457.00	- 용도폐지(2022.5.14.)된 주유취급소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로 관리																
2	○○○○○○	○○○○○○	○○○○○○	지하1/지상2	477.92	- 용도폐지(2018.6.11.)된 주유취급소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로 관리																

연번	대상물명	소재지	대상물 관리번호	층정보 (지하/지상층)	연면적 (㎡)	내 용
3	○○○○○○	○○○○○○	○○○○○○	지하0/지상2	298.80	- 용도폐지된(2020.9.21.) 주유취급소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로 관리
4	○○○○○○	○○○○○○	○○○○○○	지하1/지상2	298.00	- 용도폐지(2020.9.21.)된 주유취급소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로 관리
5	○○○○○○	○○○○○○	○○○○○○	지하1/지상2	567.33	- 위험물안전관리자(3명) 선임정보 관리소홀
6	○○○○○○	○○○○○○	○○○○○○	지하1/지상1	406.47	- 위험물안전관리자(4명) 선임정보 관리소홀
7	○○○○○○	○○○○○○	○○○○○○	지하1/지상2	389.22	- 위험물안전관리자(2명) 선임정보 관리소홀

【 현지조치 요구 】

- 용도폐지 된 주유취급소는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삭제 및 수정 입력하고, 미입력된 위험물 안전관리자 정보는 입력 관리하기 바람.

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사용승인일 관리 소홀

- ○○○소방서 ○○○과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업무 등을 처리를 하면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비롯한 자체점검, 소방활동자료조사 등의 기준이 되는 날로써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자로 관리해야 하지만, 119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정보에 사용승인일 입력(변경)을 소홀히 하여, ○○○구 ○○○동 ○○○-○○ 건물 등 ○○○개 대상에 대하여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관리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 (총 ○○○개소)

시정조치

【 현지조치 요구 】

- 119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선임한 것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을 확인 하여 수정 입력하기 바람.

5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정보 미입력

- ○○○소방서 ○○○과에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및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및 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해임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 9. 소방안전관리 능력제고」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소방관련자격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지만, ○○○구 ○○○로○○길 ○ 소재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개 대상에 대하여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안전관리자등 자격정보 등을 미입력 관리함(총 ○○○개소)

시정조치

【 현지조치 요구 】

- 미입력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정보는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기 바람.

6	<p>○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등 유지·관리 부적정</p> <p>-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같은법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등에 의거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 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관리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관리함.</p> <p>① ○○○구 ○○○로○○길 ○ 소재 ○○○(○○주점, 14/4층, 11,575.38㎡ 중 지하 1층 000.00㎡)은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 방화문 도어체크 탈락으로 방화구획을 훼손하여 부적정 관리됨.</p> <p>② ○○○구 ○○○로○○길 ○ 소재 ○○○(○○주점, 7/2층, 1,997.44㎡ 중 지상 3~4층, 000.00㎡)은 주출입구 이중덧문 설치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탈락(4층 출입구 앞 1개소)으로 부적정 관리됨.</p> <p>③ ○○○구 ○○○로 ○○ 소재 ○○○(○○주점, 5/1층, 1,374.41㎡ 중 지하 1층, 000.00㎡)은 주출입구 이중덧문(유리 자동문) 설치로 부적정 관리됨.</p> <p>④ ○○○구 ○○○로○○길 ○ 소재 ○○○(○○주점, 5/1층, 1,473.85㎡ 중 지상 2~3층, 000.00㎡)은 미방염 쇼파 사용(207호), 2층 및 3층 비상구 쪽 장애물 적치, 휴대용비상조명등 불량(201, 206, 209, 210, 211, 212, 301, 302, 310, 311호), 유도등 미점등(312호), 감지기 탈락(203, 214호)으로 부적정 관리됨.</p> <p>⑤ ○○○구 ○○○로○○길 ○○ 소재 ○○○(○○주점, 10/1층, 0,000.00㎡ 중 지상 9~10층, 452.10㎡)은 비상구 앞 에어컨 실외기 설치(9층 2개, 10층 1개), 미방염 쇼파 사용(9층 2개, 10층 2개)으로 부적정 관리됨.</p> <p>⑥ ○○○구 ○○○로○○길 ○○ 소재 ○○○(○○주점, 4/1층, 914.53㎡ 중 지하 1층, 000.00㎡)은 완비증명 발급 이후 내부구조 변경되어 구획된 실 4개 및 화장실(2개) 증가로 부적정 관리됨.</p> <p>【 현지조치 요구 】</p> <p>-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부적합 대상은 과태료처분, 조치명령,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정하게 조치하고, 관련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기 바람.</p>
---	--

7	<p>○ 다중이용업소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소홀</p> <p>- 연도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6호(완비증명·방염 후처리 업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다중이용업소)에 규정된 다중이용업소는 119 행정정보시스템에 일반사항, 관할 내 위치도, 내부 평면도 등을 입력 관리하여야 하나, 정보입력 누락 등 완비증명 발급 대상에 대한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함.</p>
---	---

시정조치

<다중이용업소 위치도, 평면도 등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누락 대상>

연번	발급번호	상 호	소재지	영업장	업종	증명발급일	비고
1	2023-243	○○○○○○	○○○○○○	지상2	일반음식점	20230821	
2	2023-75	○○○○○○	○○○○○○	지상3	학원	20230320	
3	2023-72	○○○○○○	○○○○○○	지하1	일반음식점	20230310	
4	2023-60	○○○○○○	○○○○○○	지하1	일반음식점	20230302	
5	2023-30	○○○○○○	○○○○○○	지하1	일반음식점	20230220	
6	2023-41	○○○○○○	○○○○○○	지상4,5	학원	20230216	
7	2023-40	○○○○○○	○○○○○○	옥탑6	학원	20230216	
8	2023-20	○○○○○○	○○○○○○	지상2	일반음식점	20230130	
9	2023-8	○○○○○○	○○○○○○	지상2	일반음식점	20230113	
10	2023-1	○○○○○○	○○○○○○	지하1	제과점	20230104	
11	2022-292	○○○○○○	○○○○○○	지하1	노래연습장업	20221019	
12	2022-289	○○○○○○	○○○○○○	지상2	일반음식점	20221017	
13	2022-267	○○○○○○	○○○○○○	지상1	일반음식점	20220920	
14	2022-263	○○○○○○	○○○○○○	지하1	일반음식점	20220915	
15	2022-208	○○○○○○	○○○○○○	지상2	일반음식점	20220722	
16	2022-75	○○○○○○	○○○○○○	지하1	일반음식점	20220328	
17	2022-74	○○○○○○	○○○○○○	지하1	일반음식점	20220328	
18	2022-9	○○○○○○	○○○○○○	지하3	일반음식점	20220113	
19	2022-5	○○○○○○	○○○○○○	지상1,2	일반음식점	20220113	
20	2021-388	○○○○○○	○○○○○○	지상2	일반음식점	20211124	
21	2021-371	○○○○○○	○○○○○○	지하1	일반음식점	20211123	
22	2021-350	○○○○○○	○○○○○○	지상2	일반음식점	20211022	
23	2021-349	○○○○○○	○○○○○○	지상2	일반음식점	20211022	
24	2021-338	○○○○○○	○○○○○○	지하1	일반음식점	20211013	
25	2021-308	○○○○○○	○○○○○○	지상2	일반음식점	20210914	
26	2021-304	○○○○○○	○○○○○○	지상2	일반음식점	20210910	
27	2021-303	○○○○○○	○○○○○○	지상6	학원	20210910	
28	2021-207	○○○○○○	○○○○○○	지하1	일반음식점	20210630	
29	2020-499	○○○○○○	○○○○○○	지하1	일반음식점	20201215	

연번	발급번호	상 호	소재지	영업장	업종	증명발급일	비고
30	2020-477	○○○○○○	○○○○○○	지상2	고시원업	20201124	
31	2020-451	○○○○○○	○○○○○○	지상2,4,5	일반음식점	20201030	
32	2020-424	○○○○○○	○○○○○○	지하1	제과점	20201016	
33	2020-406	○○○○○○	○○○○○○	지상2	일반음식점	20200929	
34	2020-380	○○○○○○	○○○○○○	지상2	일반음식점	20200914	
35	2020-341	○○○○○○	○○○○○○	지하2	스크린 골프연습장	20200812	
36	2020-332	○○○○○○	○○○○○○	지상2	일반음식점	20200803	
37	2020-314	○○○○○○	○○○○○○	지하1	단란주점	20200720	
38	2020-304	○○○○○○	○○○○○○	지상1,2	휴게음식점	20200715	
39	2020-305	○○○○○○	○○○○○○	지하1	일반음식점	20200713	
40	2020-301	○○○○○○	○○○○○○	지상2	일반음식점	20200709	
41	2020-294	○○○○○○	○○○○○○	지상3,4	유흥주점	20200708	
42	2020-267	○○○○○○	○○○○○○	지상2	일반음식점	20200624	
43	2020-219	○○○○○○	○○○○○○	지하1	단란주점	20200601	
44	2020-212	○○○○○○	○○○○○○	지상1,2,3	고시원업	20200525	
45	2020-193	○○○○○○	○○○○○○	지상2	일반음식점	20200515	
46	2020-169	○○○○○○	○○○○○○	지하1	일반음식점	20200428	
47	2020-150	○○○○○○	○○○○○○	지하2	일반음식점	20200420	
48	2020-157	○○○○○○	○○○○○○	지상4	고시원업	20200420	
49	2020-140	○○○○○○	○○○○○○	지하1	일반음식점	20200407	
50	2020-117	○○○○○○	○○○○○○	지하1	스크린 골프연습장	20200330	
51	2019-489	○○○○○○	○○○○○○	지하1	일반음식점	20191209	
52	2019-474	○○○○○○	○○○○○○	지상2	학원	20191129	
53	2019-372	○○○○○○	○○○○○○	지하1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20190924	

【 현지조치 요구 】

- 119행정정보시스템에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위치도, 평면도 등 누락 사항에 대해 입력하기 바람.

① “2023년 자율주행 화재순찰로봇 개발·활용” 실증사업 수행

□ 추진배경 및 현실태

- ICT(정보통신기술)로 대형복합공간에서의 재난대응의 한계 극복
- 직관적·입체적 대응작전으로 정보수집·신속대응 한계성 극복
- 지속적 민·관 기술협력으로 재난공동대응 및 지역안전공통체 형성

□ 추진경과

- 민·관 협력 자율주행 화재순찰로봇 개발·계획 수립 및 MOU 체결
 - ○○소방서(실증기관), (주) ○○○(주관기관), (주) ○○○(참여기관)
- 사전 실증 : ○○○○○○ 내 ○○스트리트(-1층) (5. 18.)
 - 영상전송(○○○ 방재실 및 ○○소방서 상황실 전송), 이동동선 매핑 등
- 공모 선정 : ○○○○○○ 서울 산업 최종 선정 (8. 31.)
 - ※실증사업 공모 지원금 : ○○○백만원((주)이오씨)
- 열화상 카메라 설치 : 23. 11월 ~ 12월 말(3대상 설치 예정)
 - 자율주행 화재순찰 로봇, 고메스트리트(-1층, 고정용), 전기차 충전소 주변(-3층, 고정용)
- 실전 배치 활용 : 24. 1월 ~
 - 화재순찰, 초기소화(가정용 소화기 탑재), 화재 및 인명정보 전달 현장영상전송, 대피방송 등
- 서울산업진흥원 현장 검증 : 2024년 7월(예정)

□ 추진내용

- 소방대의 현장 도착 전 ○○소방서 상황실에서 실시간 화재 영상 스트리밍
- (평시)화재순찰→(화재시)로봇 자체 대피방송, 현장 영상 전송, 초기 소화 등

□ 객관적 정책인정 근거

- 2023년 ○○○○○○ 서울 산업 상반기 수요과제 공모 선정(9.1.)

□ 기대효과

- 선제적 대응작전 수립을 통한 재난대응·인명구조의 효과성 제고
- 대형 지하공간·다중이용시설의 화재(재난)대응과 인명구조의 효과성 제고
- 화재 상황시 열영상분석·인명구조(대피유도) 필요 대상자 카운팅·로봇 대피 방송 등

② 소방차량 교통(안전) 사고 줄이기 추진 실천

□ 추진배경 및 실태

○ 2021년 ~ 2022년 교통사고 82건! ⇨ ‘서울 소방’ 사고 건수 최다



○ 단기 운전경력 직원 증가로 운전 미숙 해결 방안 모색 ⇨ 자체 교육만으로는 한계
↳ 지속적 운전 연습 필요 / 운전·선탭자 혼연일체 “3대 안전 원칙” 실천

□ 추진내용

○ ◎◎면허시험장 MOU 업무협약 체결

- 시험장 활용 신임 직원, 단기 운전경력자 등 운전 기초 다지기 이행



◎◎면허시험장 G 코스



특수코스 주행 교육



◎◎면허시험장 T 코스

○ ‘3대 안전원칙 꼭 지키기 실천’ 슬로건 제시

- 소방차고 주차(후진) 시 뒤 봐주기
 - ↳ 차고문 개폐여부, 민간인 보행자, 이륜차 등
- 진입로 협소 지역 진입 시 좌·우 봐주기
 - ↳ 건물 간판, 주차된 차량, 가옥 처마, 경비실 지붕 등
- 교차로 진입 시 좌·우 봐주기
 -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우선권 따지지 말고 양보 운전



□ 기대효과

○ ‘◎◎면허시험장’ 활용 기초 운전 다지기 실행 ⇨ 소방서 횡단 전개

○ ‘3대 안전원칙’ 지키기 실천! ⇨ 주요 교통사고율 30% 경감

③ IOT 플러그를 통한 SMART 전기화재 예방

□ 추진배경 및 현실태

- 겨울철 전열기구 및 난방용품 등 사용 증가로 인해 전기화재 발생 급증으로 전통시장에 IOT 플러그를 보급하여 전기화재 발생시 급격한 연소확대 및 대형 화재 방지

□ 추진경과

- IOT 콘센트 구매(2022.12.08.) ➔ IOT 콘센트 전통시장 배부(2023.02.)

□ 추진내용

- IOT 콘센트 구매 및 보급
 - 총 192개(○○전통시장 112개, ○○시장 78개, 시범사용 2개)



- 전통시장 상인 등 사용법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전통시장에 IOT 플러그를 보급하여 전기화재 발생시 급격한 연소확대 및 대형 화재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4 생활안전대원 “현장 맞춤형 기능성 조끼” 보급

□ 추진배경

- 생활안전대원 전문화 된 조끼 미 지급 ⇨ 장비 휴대 불편, 현장활동 둔화
- 기존 지급조끼 기능성 및 내구성 저하 ⇨ 현장활동 불가, 현장활동 맞춤형 조끼 필요

□ 추진내용

- ◎◎소방서 시범사업 추진 ⇨ 2021. 10월 ~ 12월(◎◎◎별/금00,000천원)
 - 기능성 조끼에 다기능 패치 등 부착 → 일정 기간 착용 후 대원 의견 수렴 등
 - 개선된 국제 공용방식(1997년 미국 개발) 체택 제작 ⇨ 기능성·기동성·내구성 향상



- 격무 생활 안전대 펌프차(P) 대원 우선 지급 ⇨ ◎◎119안전센터 등 3개소

※ 기존 및 개선 된 조끼 비교 (예시)



기존 조끼
(장비부착 미흡, 기능성, 기동성, 내구성 저하)



개선 된 조끼
(자유로운 패치 부착, 가볍고 내구성 강함)

□ 기대효과

- 전문화된 생활안전대 활동 기대, 자부심 고취 등